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정 윤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
: 성별에 따른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201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방 신 정

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
: 성별에 따른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이 정 윤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방 신 정

인 준 서

방신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11월

심사위원장 서수연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조영일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이정윤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감사의 글

정신없이 흘러가던 대학원 생활도 어느덧 마무리를 지을 때가 되었습니다. 힘들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지난 그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니 참으로 값진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부족한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시고 세심하고 따뜻하게 지도해주신 이정윤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해가 느린 저에게 참을성 있게 통계를 가르쳐주시고 조언을 주셨던 조영일 교수님과, 부드러우면서도 예리한 피드백을 해주셨던 서수연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많은 질문에도 웃으면서 답해주셨던, 상냥하고 유능한 '어벤저스' 40기 이수진, 이아람, 이유주, 조준희 선생님과 조희경 박사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함께 논문을 쓰며 기쁨과 슬픔, 어려움과 즐거움을 나누었던 소중한 인연들인 김예지, 김지은, 박지은, 이다연, 이해인 동기들과 정혜정 선생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대학원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었고, 진심으로 이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벅찼을 테지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 논문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부모님과 남동생, 오랜 나의 친구이자 가족인 강아지 여름이에게도 감사합니다. 이 논문을 쓰던, 그리고 쓰기 위한 과정들의 기억은 앞으로의 저의 삶에 힘들었지만 그만큼 아주 소중하고 찬란하게 간직될 것 같습니다.

2017년 겨울

방 신 정

논문개요

본 연구는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를 성희롱 통념이 매개하는지, 또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녀 대학생 263명을 대상으로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 척도, 그리고 성희롱 피해자 비난 정도를 평정할 수 있도록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제작한 4가지 시나리오(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신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둘째,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은 성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신체형 성희롱-소극적·적극적 대처 상황과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를 성희롱 통념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다섯째,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의 경우,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완전 매개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후속 연구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양가적 성차별 주의, 성희롱 통념, 성희롱 피해자 비난, 매개된 조절 효과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II. 이론적 배경	6
1. 성희롱과 피해자 비난	6
1) 성희롱의 정의	6
2) 성희롱 발생원인	8
3) 성희롱 피해자 비난	10
2. 양가적 성차별 주의	12
1) 양가적 성차별 주의의 개념	12
2)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15
3. 성희롱 통념	16
1) 성희롱 통념의 개념	16
2)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	17
3) 성희롱 통념과 성희롱 피해자 비난	18
4. 성별에 따른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의 관계	19
III. 연구문제 및 가설	22
1. 연구 모형	22
2. 연구문제 및 가설	23

IV. 연구방법	25
1. 연구대상	25
2. 측정도구	25
1) 양가적 성차별 주의 척도	25
2) 성희롱 상황 시나리오	27
3) 성희롱 통념 척도	29
3. 분석방법	31
V. 연구결과	32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및 성별 간 차이 분석 ...	32
1)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 및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32
2) 성별 간 차이 분석	38
2. 매개효과 검증	41
1)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성희롱 피해자 비난 (1)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41
(2)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43
2)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성희롱 피해자 비난 (1)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45
(2)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48
3)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성희롱 피해자 비난 (1)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50
(2)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53
4) 신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성희롱 피해자 비난	
(1)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55
(2)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58
3.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	60
1)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성희롱 피해자 비난	
(1)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 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60
(2)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 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61
2)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성희롱 피해자 비난	
(1)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 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63
(2)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 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64
3)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성희롱 피해자 비난	
(1)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 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66
(2)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 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69
4) 신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성희롱 피해자 비난	
(1)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	

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70
(2)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	
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71
4.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72
1)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성희롱 피해자	
비난	72
2)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성희롱 피해자	
비난	76
 VI. 논의 및 제언	 79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양가적 성차별 주의, 성희롱 통념, 조건별 피해자 책임, 피해자 비난, 가해자 책임 간 상관분석과 기술통계	37
표 2. 성별을 집단변수로 한 독립표본 t -검증	40
표 3.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의 경우 회귀분석에 의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수: 적대적 성차별 주의)	42
표 4.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의 경우 회귀분석에 의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수: 온정적 성차별 주의)	44
표 5.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회귀분석에 의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수: 적대적 성차별 주의)	47
표 6.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회귀분석에 의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수: 온정적 성차별 주의)	49
표 7.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회귀분석에 의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수: 적대적 성차별 주의)	52
표 8.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회귀분석에 의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수: 온정적 성차별 주의)	54
표 9. 신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의 경우 회귀분석에 의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수: 적대적 성차별 주의)	57
표 10. 신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의 경우 회귀분석에 의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수: 온정적 성차별 주의)	59
표 11.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의 경우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61
표 12.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62

표 13.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63
표 14.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64
표 15.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의 유의성 검증 (독립변수: 온정적 성차별 주의)	66
표 16.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68
표 17.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의 유의성 검증 (독립변수: 적대적 성차별 주의)	69
표 18.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70
표 19. 신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의 경우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71
표 20. 신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72
표 21.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성희롱 통념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독립변수: 온정적 성차별 주의)	74
표 22.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매개된 조절효과 유의성 검증 (독립변수: 온정적 성차별 주의)	75
표 23.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성희롱 통념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독립변수: 적대적 성차별 주의)	77
표 24.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매개된 조절효과 유의성 검증 (독립변수: 적대적 성차별 주의)	78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모형 1	22
그림 2.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의 경우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42
그림 3.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45
그림 4.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47
그림 5.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50
그림 6.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52
그림 7.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55
그림 8. 신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의 경우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57
그림 9. 신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60
그림 10.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65
그림 11.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68
그림 12.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성희롱 통념이 매개된 성별의 조절모형 (독립변수: 온정적 성차별 주의)	75

그림 13.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성희롱 통념이 매개된
성별의 조절모형 (독립변수: 적대적 성차별 주의) 78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성희롱을 근절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희롱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6)에서 직장인 1,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35%가 ‘직장에서 성희롱 행위를 가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45% 특히 여성의 경우 두 명 중 한 명 수준으로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직장 내 성희롱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2016)의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에서도 중고생 6,100명 중 중학생의 6.2%, 고등학생의 9.5%가 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거나 성희롱 장면을 목격했다고 보고하여, 직장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성희롱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대학에서 남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여학생들이나¹⁾ 여교수²⁾에 대한 성희롱 발언이나 신입생 환영회와 MT, 실험실 등에서의 학생 간에 발생한 성희롱 사건³⁾이 자주 보도되면서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과 파장을 주고 있다.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정규(1998)는 성 피해의 심리적 후유증을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피해자들은 정서영역에서는 불안, 강박, 무기력, 우울, 분노, 낮은 자아존중감 등을 보이며, 인지각영역에서는 감정억압, 부정, 인지왜곡 등을, 신체영역에서는 수면장

1) 국민일보, “온라인에 숨어든 ‘女혐오’... 대학 ‘단톡방’ 성희롱 심각”,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48856&code=11131100&cp=nv>, 2017.05.17.
2) 조선일보, “동기 카톡방에서 여교수 성희롱 대학생들 벌금형”,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6/2017062601632.html, 2016.06.26.
3) 국민일보, “깃속말 게임 이렇게 악용하다니... 신입생 성희롱에 대학 ‘발칵’”,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468912&code=61121211&cp=nv>, 2017.05.16.

에, 심인성 통증, 왜곡된 신체이미지 등을, 대인관계영역에서는 거부공포, 친밀공포 등을, 행동영역에서는 자해, 공격행동, 섭식장애, 알콜 및 약물남용 등을, 성적 영역에서는 왜곡된 성적체감과 성기능장애 또는 과잉성행동 등의 다양한 부정적인 증상을 겪는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주원(2007)은 직장 내 성희롱 경험이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원숙(2001)도 대학 내 성희롱이 피해자들의 학업 의욕 감소부터 인간관계의 손상, 심하면 학업 단절까지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렇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들은 직접적인 일차적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귀인하는 이차적 피해를 당하게 되며, 심지어 자기비하까지 경험하게 될 수 있다. 김정인, 손영미, 김효창(2001)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경향이 강했으며 피해자들이 과잉 반응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2015)의 ‘성희롱 2차 피해 실태 및 구제강화를 위한 연구’에서 대·중소기업 근로자 여성 4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181명 중 51%(94명)가 ‘안 좋은 소문’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또,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여성들 중 성희롱 피해를 주변에 말했을 경우 ‘공감 및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응답이 22%로 집계되는 등 상당수의 피해자가 주변의 냉담한 반응과 의심,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쉽사리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피해자 비난 현상의 기저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성태도(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5)와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석재, 최상진, 2001)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Glick과 Fiske(1996)는 남성들이 여

성에 대하여 권력 경쟁에 기반을 둔 적대감 뿐만 아니라 친밀감과 의존성도 함께 갖는 양가적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양가적 성차별 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양가적 성차별 주의는 크게 적대적 성차별 주의(hostile sexism; HS)와 온정적 성차별 주의(benevolent sexism; BS)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적대적 성차별 주의란 여성이 남성의 권위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려 하거나 남성에게 비합리적 요구를 한다는 인식에 따른 여성에 대한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말하며, 온정적 성차별 주의란 전통적인 역할에 부합되는 여성들을 온정주의에 입각해 애정과 보호의 대상으로 보지만 궁극적으로는 전통적 역할을 유지하는 여성에 대해 보상을 줌으로써 기존의 남성 지배적 권력구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는 개념이다. 윤병해와 고재홍(2006)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양가적 성차별 주의가 클수록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아지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정도와 피해자를 비난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양가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을 높이는 요인임을 시사하였다.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즉 성희롱 통념 역시 피해자를 비난하는 현상의 원인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성희롱 통념(sexual harassment myth)이란 성희롱 가해자의 원치 않는 관심과 시각적·언어적·신체적 언행을 해석하고,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못 판단하도록 만드는 편파되고 고정관념화된 신념이다(김정인, 손영미, 김효창, 2006). 조주현(2008)은 “대학공동체가 성희롱에 대한 성별 인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성희롱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성희롱을 잘못된/서투른 성적 표현으로 보는 우리사회의 통념이 결합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며 성희롱 통념의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김정인, 손영미, 김효창(2001)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적 성역할태도와 성희롱 관련 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성희롱을 피해자가 과잉반응한 것이라 보는 경향이 강하고

성희롱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 쪽에 귀인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많은 선행연구들은 성별에 따라 성희롱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기준의 역치가 다를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안서원 등(2004)의 연구에서 남녀 대학생들이 약한 성희롱 장면과 강한 성희롱 장면에서 반복 노출되었을 경우, 강한 성희롱 장면에서는 남녀 모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약한 성희롱 장면에서는 여학생은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한 반면 남학생의 태도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경과 마경희(2002)의 연구에서는 직장 내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특정 행위를 성희롱으로 보는 것에 대한 인정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하혜숙과 김계현(2007)의 연구에서는 신체형 성희롱은 남녀 대학생 모두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언어형 성희롱에 대해서 남학생은 주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한 반면 여학생만 성희롱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성희롱의 경우 이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남녀 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성별에 따른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 성희롱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의 차이를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비교적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김정인, 최상진, 손영미, 2001; 윤병해, 고재홍, 2006; 이정원, 안상수, 김혜숙, 2009; 양동욱 등, 2012; 서윤정, 박지선, 2013; 최인숙, 김정인, 2015). 윤병해와 고재홍(2006)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강간 통념의 수용도가 더 높으며, 성폭력 피해자의 책임과 비난은 더 크게, 가해자 처벌은 더 작게 하였다고 보고한 반면, 이정원, 안상수, 김혜숙(2009)은 양가적 성차별 주의가 높은 여성은 남성보다 강간 피해자에게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는 등 성차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비교적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성별에 따라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게 도출됨에 따라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

념, 그리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정도 간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반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강한 수준의 성폭력에 해당하는 강간에 관련된 사회적 통념인 강간통념을 주로 다루었다.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시나리오 역시 대개 직접적인 성기의 삽입이 이루어진 강간이나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진 심각한 수준의 성폭력을 주로 다루고 있어, 언어적 혹은 시각적으로 성적 의미를 띤 언행과 같이 비교적 가볍게 여겨지는 성희롱에 대한 내용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나윤경과 노주희(2013)는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을 인식하는 감수성이 낮은 것은 이제까지 국내 성폭력 담론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성폭력이 아니라 ‘전자발찌’나 ‘화학적 거세’와 같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사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강간과 같이 강도가 높은 ‘사건 중심의’ 성폭력뿐만 아니라, 보다 교묘하고 모호하게 일상생활 속에 만연해있는 성폭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양가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통념을 매개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비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꾀하고, 성문제 관련 상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성희롱과 피해자 비난

1) 성희롱의 정의

성희롱은 영어의 sexual harassment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으로, 사전적으로는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 정의되고 있다. 성희롱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며 그 정의 역시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성희롱을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가해지는, 원치 않은 성적 속성을 띤 시각적, 언어적, 신체적 형태의 언행이라 보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상대의 불쾌감이나 굴욕감과 같은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물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이며, 상대적으로 지위와 힘을 가진 자가 자신보다 약한 자에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을 가함으로써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성희롱 행위 수용여부가 개인의 고용 및 인사상의 불이익으로 나타나는 것을 포함한다(김정인, 최상진, 손영미, 2001). 성희롱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폭력 범죄를 제외한 그 외의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위로서 간주되는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성적 침해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어왔으나(조주현, 2008), 이명신(2012)과 서의훈(2004)은 성희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불쾌하고 수치감을 유발하는 성적 언동으로 단순한 성적 농담 및 음담패설에서부터 성추행, 성폭행에 이르는 일련의 스펙트럼 상에 놓여 있는 다양한 성적 침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성희롱으로 규정되는

행위들과 그로 인한 피해가 결코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이 비교적 경미한 성적 침해로 분류되는 경향의 원인 중 하나로 성희롱이라는 용어 자체의 가벼움을 지적하며, 문제의 포착과 인식, 대응, 개선을 위해 ‘성적 괴롭힘’으로 용어를 재명명하자는 주장도 있다(이명신, 2014; 한희정, 전해정, 2015).

현행법 중 성희롱과 그 규제에 관련된 법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있다. 관련 법조항들을 종합하였을 때, 성희롱의 법적인 정의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희롱에 관한 법적 조항은 대부분 직장에 초점을 맞춰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이라는 요건이 붙어있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에 관련되어 있을 경우, 즉 주로 수직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원치 않은 성적 언동만을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생이 성희롱의 행위자일 경우나 지위나 업무가 개입되지 않은 수평적인 관계(친구·집단 내 관계 등)에서의 성희롱 문제는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비교적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기존에는 처벌이 어려웠던 메신저와 채팅상에서의 성희롱을 포함하여 지위 또는 업무관련성, 공연성, 성적 욕망 유발·만족 등을 배제하고 반복적 성적 언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처벌대상이 되게 하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⁴⁾. 이렇게 법적으로도 성희롱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넓히고 가해자의 의도나 언동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을 더욱 고려하여 성

4) 파이낸셜뉴스, “카톡방, 채팅창 성희롱도 처벌 추진”, <http://www.fnnews.com/news/201705300924133720>, 2017.05.30.

희롱을 인식하고자 노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성희롱이라는 개념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자들과 관련기관들 간에 의견의 차이와 혼동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인, 최상진, 손영미(2001)의 연구에서 정의되었던 것과 같이, 성희롱을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가해지는, 원치 않은 성적 속성을 띤 시각적, 언어적, 신체적 형태의 언행’이라 보고자 한다.

2) 성희롱 발생원인

성희롱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모델(자연생물학적 모델, 조직 모델, 사회문화적 모델, 성역할이월 모델, 개인차 모델, 4요인 통합 모델 등)이 제시되어 왔는데,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될 예정이므로 대학 상황에 잘 적용될 수 있는 조직 모델, 사회문화적 모델 및 개인차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조직 모델은 조직의 위계구조와 구성원들 간의 권력불평등이 성희롱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본다(MacKinnon, 1979; 양돈규, 김정인, 2016에서 재인용). 조직은 수직적 상하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직 위계에서 더 높은 곳에 위치한 상급자(선배, 조교, 교수 등)가 하급자(후배, 학생 등)에게서 성적 만족감을 강제로 얻어내기 위해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 내에서 선후배의 위계를 엄격하게 강조하거나 교수의 영향력이 큰 학과에서 성희롱 발생률이 높은 것은 이러한 지위 혹은 권력남용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장필화(1995)는 직장 내 성희롱의 발생 원인이 직장 내의 성 불평등적 구조와 성차별적 관행, 그리고 ‘여성의 일’에 기대되는 성적 역할이라 보았다. 이은하(2010)도 직장 내 성희롱은 성희롱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직 내 성문화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

를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과정을 통해 유지된다고 보았다.

사회문화적 모델에서는 성희롱이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에 초점을 두어, 성희롱을 남녀 간의 문화적으로 합법화된 권력과 지위 차이의 산물이라고 가정한다(MacKinnon, 1979; 양돈규, 김정인, 2016에서 재인용). 이 모델에 따르면, 성희롱은 과거에 주로 여성들에 비해 권력과 지위가 있었던 남성들이 자신들 위주로 정해온 규칙들을 사회적 신념이 합법화 혹은 정당화하는 보다 큰 가부장 체제의 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직장에서의 성희롱은 남성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발생한다고 본다. 장필화(1995)는 우리나라의 성차별 문화를 배경으로 성희롱이 발생, 유지된다고 하였다. 성역할 사회화를 기초로 한 성의 사회화를 통해 성 고정관념이 강화됨으로써 남성의 성희롱은 오히려 ‘남성다운’ 행위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여성들은 성희롱을 당해도 소극적인 대처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희롱 상황에서의 성 고정관념을 반영한 남녀 간의 의사소통 왜곡은, 결과적으로 성희롱을 성희롱으로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축소·왜곡시키거나 더 심각한 성희롱 상황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

개인차 모델은 성희롱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과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개별적 특성을 구분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양돈규와 김정인(2016)은 “개인차 모델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개인의 특성들은 사회화 과정에서 이미 형성된 것이지만 그가 속한 사회나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도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 보았다. Pryor(1987; 양돈규, 김정인, 2016에서 재인용)는 성적으로 희롱할 가능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여 이 척도상의 점수가 적대적인 성적 신념, 강간통념의 수용, 성역할 고정관념, 미약한 여성주의적 태도 등과 매우 강력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적대적인 성적 신념이나 성역할 고정관

념과 같은 성희롱 가해 가능성과 관련된 변인들은 후술할 양가적 성차별 주의가 부성주의, 성역할 분화 및 이성애의 세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직모델과 사회문화적 모델, 개인차 모델을 바탕으로 성희롱 상황의 가해자를 피해자보다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학과의 선배인 경우로 설정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가해자는 남성으로, 피해자는 여성으로 가정하고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이 높은 개인이 유의하게 성희롱 피해자를 비난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3) 성희롱 피해자 비난

피해자 비난(victim blame) 현상은, 세상이 근본적으로 정의롭고 공평한 곳이라고 믿는 경향인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belief in a just world)이 불행한 사건의 발생에 의해 위협을 당할 때, 그 역경이나 불운의 발생 원인을 피해자 쪽으로 돌림으로써 합리화하는 경향을 말한다(Lerner, 1980; Aronson, 2002에서 재인용). 이러한 현상은 심지어 강간과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상황에서조차 발생하는데(Janoff-Bulman, 1985), 즉 성희롱 피해자가 옷을 너무 야하게 입었기 때문에 상대가 성욕을 참지 못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화를 자초한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성희롱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이나 행동과는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책임을 귀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생각이라 볼 수 있으나, 심지어 피해자조차도 그러한 피해자 비난 경향성을 갖는다는 연구가 있다(Janoff-Bulman, 1979). Correia, Vala와 Aguiar(2001)은 성폭력의 범죄 유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즉 결백해 보이는 피해자들도 관찰자의 공정한 세상 신념 이론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국내에서도 남성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명신, 양난미, 2012)에서 여성 피해자의 음주여부나 심한 노출, 몸가짐과 행실로 인해 성폭력을 자초했다고 비난하는 태도가 33.5%~53.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상당수의 남성경찰관들에게 여성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주요신문 4개 사의 강간 보도를 분석한 연구(이정교, 서영남, 최수진, 2009)에서도 피해자의 관점에서 서술된 기사는 18.6%에 불과했으며, 피해자의 과거 성 경험을 굳이 언급하는 것과 같이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발견된 기사의 비율은 22.3%에 달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귀인시키도록 조장할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김은지와 박지선(2011)은 전통적인 고정관념적 성역할 개념에서 비롯된 남녀 차별적 시각이 성폭력 피해자 책임 귀인 현상과 관련이 높다고 하였다. 양동옥 등(2012)도 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옷차림이 노출이 크고 음주량이 많을수록 남녀 모두 가해자를 덜 비난하고, 피해자를 더 비난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현 성폭력 교육이 가해자를 예방하는 차원보다는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성폭력을 당할 만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으로 구분 짓고 피해자를 폄하하거나 피해자가 그럴 만한 행동을 했으니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현상은 “이차적 피해”를 유발하는데, 이차적 피해란 성폭력에 의해 발생하는 일차적 피해(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이외에 성폭력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회적,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성폭력상담소; 김용근, 2008; 이명신, 양난미, 2012에서 재인용). 이재희와 이기숙(2009)의 연구에 따르면, 이차적 피해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 가족 및 주변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사람들로 부터 광범위하게 발생하며, 피해자들은 이차적 피해로 인한 고통이 더욱 크다고 보고하였다. 사생활을 침해하는 질문이나 성적인 질문과 같이 다양한 사람들로 부터 가해지는 이차적 피해는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죄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성폭력을 당해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만들거나, 사회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한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거나, 수면장애 혹은 자살 사고까지 유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결론적으로, 피해자 비난 현상은 성희롱의 심각성을 축소, 왜곡시키고 성희롱을 비롯한 성범죄를 용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며,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더욱 크게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성희롱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폭력이라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뿐 아니라, 피해자와 비슷한 위치의 상대가 가하는 성희롱이나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희롱에 대한 형법상의 처벌이 어려운 현 상황을 감안할 때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책임 귀인 현상은 더욱 쉽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2. 양가적 성차별 주의

1) 양가적 성차별 주의의 개념

양가적 성차별 주의(ambivalent sexism; AS)는 Glick과 Fiske(1996)가 제안한 개념으로,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권력 경쟁에 기반을 둔 적대감뿐만 아니라 여성들과 이성 관계나 부부관계와 같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여성에 대한 친밀감과 의존성도 함께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Glick과

Fiske(1996)는 이러한 논리에 따라 성차별 주의를 적대적 성차별 주의(hostile sexism; HS)와 온정적 성차별 주의(benevolent sexism; BS)로 구별하였다. 먼저,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이 남성의 권위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려 하거나 남성에게 비합리적 요구를 한다는 인식에 따른 부정적인 태도이다. 이러한 적대적 성차별 주의를 여성이 여권운동이나 성적 매력을 이용해 기존 남성의 지위와 권위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각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여성은 주도적으로 과제를 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 경제, 정치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맡는 데 부적합하다는 신념을 갖는 경향이 있다. 반면, 온정적 성차별 주의를 전통적인 역할에 부합되는 여성들을 온정주의에 입각해 애정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호의적 감정에 기초한 태도이다. 온정적 성차별 주의를 여성들과 이성 관계를 가지며 상호 의존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보호적 관심과 보완적인 성역할의 기대, 친밀감 등으로 이루어져 언뜻 보면 여성을 우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보다 더 은밀하고 교묘한 형태의 성차별로서 전통적 역할을 유지하는 여성에 대해 보상을 줌으로써 기존의 남성 지배적 권력구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Glick과 Fiske(1996)의 양가적 성차별 주의 이론에 따르면, 적대적 성차별 주의(HS)와 온정적 성차별 주의(BS)는 부성주의(paternalism), 성역할 분화(gender difference), 그리고 이성애(heterosexuality)의 공통된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모두 여성에 대한 적대적이지 온정적인 감정을 동시에 내포하는 양가적인 속성이 있으며,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성주의(paternalism)는 아버지가 자녀를 다루듯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으로, 성차별주의가 애정과 보호를 의미하는 보호적 부성주의(protective paternalism)와 지배와 종속을 의미하는 지배적 부성주의(dominant paternalism)를 포함하기 때문에 양가적 속성을 지닌다. 지배적

부성주의는 가부장제와 같이 여성은 남성만큼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 것을 정당화한다. 보호적 부성주의는 남성은 출산능력이 없으므로 아내, 어머니, 사랑의 대상으로서 여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힘이 있는 남성이 연약하며 사랑받아야 마땅한 존재인 여성을 보살피고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신념을 통해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지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 즉, 연약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남성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역할 분화(gender differentiation)는 남성의 역할과 신체적 특성이 여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를 갖는 데 더 적합하다는 논리로, 남녀의 지위의 차이를 정당화하고 남성이 경쟁적 성역할 분화(competitive gender differentiation)를 통해 여성을 하향비교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남성들의 자존감을 고양시킨다. 또한, ‘여성이 집안일에 더 적합하다’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서적으로 민감하다’와 같이 남성에게 부족한 측면에 대해 보완적인 여성의 특성을 고정관념적으로 귀인시키는 보완적 성역할 분화(complementary gender differentiation)를 통해 ‘남자는 여자 없이 완전해질 수 없다’는 태도를 가지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근거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성애(heterosexuality)는 남성이 여성에게 느끼는 양가적인 감정의 가장 두드러진 원천이다. 이성애적 사랑은 남녀 모두에게서 행복의 척도가 되며,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이성애는 여성을 심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친숙하게 느껴지게 한다. 이러한 이성애적 친밀성(heterosexual intimacy)은 ‘남성은 반드시 사랑하는 여성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와 같이 남녀관계를 낭만적이고 친밀한 관계로만 규정함으로써 여성을 보호와 애정의 대상으로 보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의존성은 사회문화적으로 지위가 높은 집단성원(남성)

이 종속집단의 성원(여성)에게 의존해야 하는, 남성들에게는 다분히 위협적인 상황을 발생하게 한다. 이러한 관계는 여성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성적 특성을 이용한다는 반감에 바탕을 둔 적대적 이성애(heterosexual hostility)를 초래할 수 있다.

김혜숙 등(2005)의 연구에서 남녀 모두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높아질수록 전반적으로 여성 집단 모두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형적인 여성 집단(가정주부, 자원봉사자 등)보다는 비전형적인 행동을 보이는 여성 집단(미혼모, 레즈비언 등)에게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며,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높아질수록 전형적인 여성 집단에 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남성 중심의 제도와 권위에 도전하거나 부인하는 여성들에게 적대적·차별적 태도를 취하도록 하고, 온정적 성차별 주의는 남성 중심 체제에 부합하는 여성들에게 보상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는 것을 지지해준다.

2)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서윤정과 박지선(2013)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양가적 성차별 주의 중 적대적 성차별 주의를 가지고 있을수록 남녀 모두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더욱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온정적 성차별 주의를 가진 남성의 경우에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온정적 성차별태도 간에 유의한 상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강할수록 사건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더 전가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과소평가하며, 가해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정원, 안상수, 김혜숙(2009)이 남녀 청소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높을수록 강간 피해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적대적 성차별 주의에서 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최인철과 진정희(2003)의 연구에서도 양가적 성차별 주의를 강하게 보일수록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덜 묻고,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Yamawaki(2007)가 모르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시나리오와 데이트에서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시나리오를 읽은 뒤 강간문제를 축소(과소평가)하는 경향, 그리고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높을수록 데이트 상황에서 강간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더 많이 하고 가해자를 옹호하였으며,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높을수록 모르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강간 문제를 축소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양가적 성차별 주의를 강하게 보일수록 성희롱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3. 성희롱 통념

1) 성희롱 통념의 개념

성희롱 통념(sexual harassment myth)이란, 원치 않는 성적 관심과 시각적·언어적·신체적 언행을 잘못 해석하고, 성희롱 가해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못 판단하도록 만드는 편파되고 고정관념화된 신념이다(김정

인, 손영미, 김효창, 2006). 이러한 성희롱 통념에는 성희롱의 발생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려는 통념(“당할 만하다, 그러고 다니니 당하지”)과 행위에 대한 오해 및 과잉반응과 관련된 통념(“희롱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놀렸을 뿐이야”)이 있다. 성희롱 통념은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주변 사람, 일반인 모두에 영향을 미치며, 성희롱의 원인을 피해자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주며 가해 행위를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김정인, 손영미, 김효창, 2006),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처를 방해한다(Jensen & Gutek, 1982; Aronson, 2002에서 재인용). 또한 성희롱 통념은 여성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고 성희롱을 해도 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해주는 기능을 하며, 성희롱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신체적 피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사안의 중요성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김정인, 손영미, 김효창, 2006). 이러한 성희롱 통념은 주로 여성보다는 남성의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정인, 최상진, 손영미, 2001; 김정인, 손영미, 김효창, 2006), 성희롱 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김정아, 구해경, 현명호, 2013).

국내에서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강간통념, 강간 피해자에 대한 비난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윤병해와 고재홍의 연구(2006)가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양가적 성차별 주의가 클수록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아지고 피해자 책임과 피해자 비난이 높아졌으며, 특히 적대적 성차별 주의에서 강간통념 수용도가 매개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2)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

다. 먼저, 김재은과 김지현(2016)이 직업군인집단(남성중심집단)의 남녀와 교사집단(여성중심집단)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남성중심집단과 여성중심집단의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강간통념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강간통념 간의 상관관계는 소속 집단에 상관없이 남녀 모두에게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여성중심집단에 속해있는 여성보다 남성중심집단에 속해있는 여성들의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강간통념이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으며, 군인이 교사보다, 남성이 여성보다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강간통념 수용도의 평균이 높았다. 이는 남성이 다수인 조직에 속한 여성들은 성차별주의가 강할수록 남성의 기존체제 정당화 논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의미하며, 성역할 고정관념이 보수적일수록 강간통념을 더 수용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양가적 성차별 주의가 여성주의와 고정관념적인 성역할과 관련이 있다는 점과 연결된다.

윤병해와 고재홍(2006)의 연구에서도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강간통념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화 과정에서 양가적 성차별 주의가 강간통념보다 더 빠른 시기에 습득된다고 보았다. 또한 김혜선(2008)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양가적 성차별 태도 중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통념과 상관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최인숙과 김정인(2015)도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 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로 미루어 볼 때, 양가적 성차별 주의가 높을수록 성희롱 통념 수용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3) 성희롱 통념과 성희롱 피해자 비난

성희롱 통념과 성희롱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 간의 관계를 본 연구로는 먼저 이석재와 최상진의 연구(2001)가 있다. 이들에 따르면 강간통념을 수용

하는 사람일수록 성폭행 사례를 강간통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각하였으며, 성폭행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정인, 손영미, 김효창(2001)의 연구에 의하면, 성역할 태도와 성희롱 관련 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성희롱이 피해자가 과잉반응을 한 것이라 보는 경향이 강하고, 성희롱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 쪽에 귀인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아, 구해경, 현명호(2013)는 성희롱 통념이 높을수록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공감감이 낮아졌으며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생 및 경찰을 대상으로 한 박지선과 김정희(2011)의 연구에서도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낮게 평가하며, 가해자에 대해 최대한 경미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Grubb과 Turner의 연구(2012)에 따르면, 여러 선행연구들(Abbey et al., 1998; Lambert and Raichle, 2000; Mynatt and Allgeier, 1990)을 종합한 결과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강간 피해자에 대한 비난 정도가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성희롱 통념이 높아질수록 성희롱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4. 성별에 따른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의 관계

선행연구들은 성희롱의 상황적 요소를 변화시킴에 따라 남녀 간의 성희롱에 대한 판단과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주목하였다. 먼저 하혜숙과 김계현(2007)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성희롱 판단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희롱의 행위유형에 따른 성희롱 판단에 있어 성차가 나타났

다. 신체형 성희롱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언어형 성희롱에 대해서는 남학생은 주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여학생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대처 방식에 따른 성희롱 인식에서도 남녀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김정인과 최상진, 박정열(2002)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피해자의 소극적 대처보다는 적극적 대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들은 보복을 피하기 위해 조용히 있는 것이 상책이라는 소극적 대처를 여학생들에 비해 강하게 반대하면서도, 정작 피해 사실을 보고하거나 고발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대처에 대해서는 여학생들에 비해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성희롱을 어떻게 판단하고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는 성희롱 피해자를 비난하는 정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희롱의 행위유형과 피해자의 대처 수준에 따라 4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 성희롱 피해자를 비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차를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비교적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윤병해와 고재홍(2006)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강간 통념의 수용도가 더 높고, 성폭력 피해자의 책임과 비난은 더 크게, 가해자 처벌은 더 작게 지각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최인숙과 김정인(2015)의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들이 여자 대학생들에 비해 성폭력 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고, 강간 사건의 피해자를 더 비난하며, 사건의 발생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경향이 더 크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정인, 최상진, 손영미(2001)의 연구 역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희롱 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고 성희롱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더 귀인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양동옥 등(2012)의 연구에서는 피해자의 옷차림의 노출이 크거나 음

주량이 높을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강간 사건의 피해자를 더 비난하고 피해자의 책임을 가해자의 책임보다 더 크게 지각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정원, 안상수, 김혜숙(2009)도 양가적 성차별 주의가 높은 여성은 남성보다 강간 피해자에게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서윤정과 박지선(2013)은 남성의 경우에는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강할수록 사건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더 전가하고, 피해자가 사건으로 인해 느낄 고통에 대해서는 더 적게 평가하며, 가해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난 것에 대하여 양동옥 등(2012)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이 성차보다는 개인이 지닌 강간 통념이나 적대적 성차별 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며, 남성중심 사회의 가치를 여성 자신도 내면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김혜숙 등(2005)도 여성이 ‘순수함’을 간직한 존재라는 고정관념을 위협하거나 이로부터 이탈되어 보이는 여성들(성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여성 스스로가 더욱 배타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현상에 대하여, 여성들이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내포된 남성중심의 지배체제 논리를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던 연구 결과(김정인, 최상진, 손영미, 2001; 윤병해, 고재홍, 2006)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별 간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매개변수인 성희롱 통념을 거쳐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Ⅲ. 연구문제 및 가설

1. 연구 모형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의 관계에서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정한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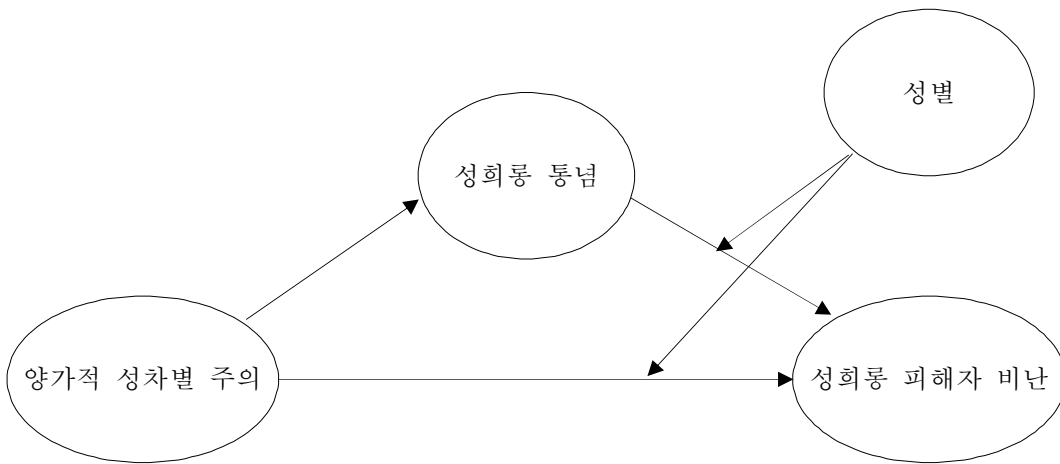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2. 연구 문제 및 가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1-1.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성희롱 통념과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희롱 통념이 매개효과를 갖는가?

가설 2-1.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를 성희롱 통념이 매개할 것이다.

【연구문제 3】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는 성희롱 통념으로 매개되는가?

가설 3-1.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에 성별의 조절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즉, 양가적 성차별 주의가 높은 남성은 여성보다 유의하게 성희롱 피해자를 더 비난할 것이다.

가설 3-2.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는 성희롱 통념을 매개할 것이다. 즉, 남성의 경우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는 유의하게 더 커질 것이다.

IV.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G*power 프로그램 3.1.9.2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증력 .80, 효과크기 .15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산출된 최소 표본수가 260명인 것을 근거로, 설문지 회수율과 결측치를 고려하여 서울과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와 회수하지 못한 자료 37부를 연구에서 제외한 뒤, 최종적으로 총 263명(남자 106명, 여자 157명)의 자료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1.9세(SD=2.26)였으며, 학년은 각각 1학년이 75명(28.2%), 2학년이 58명(21.8%), 3학년이 69명(25.9%), 4학년은 61명(22.9%)이었다.

2. 측정 도구

1) 양가적 성차별 주의 척도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 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Glick과 Fiske(1996)의 양가적 성차별 주의 척도를 근거로 안상수, 김혜숙, 안미영(2005)이 제작한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 주의 척도(K-ASI)를 다시 안상수 등(2007)이 축약·보완한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Korea Multiple Sexism

Inventory; K-MSI)를 사용하였다. K-MSI는 적대적 성차별 의식을 측정하는 12개 문항과 온정적 성차별 의식을 측정하는 12개 문항,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대적 성차별 의식은 지배적 남성주의(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능력이 떨어지므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식), 경쟁적 성역할 분화(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특성과 역할을 가지므로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나 여성들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불평과 요구를 한다는 인식), 적대적 이성애(여성이 성적 매력을 이용하여 남성을 통제하려 든다는 인식)의 세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정적 성차별 의식은 보호적 남성주의(여성은 출산을 해야 하나 신체적으로 연약하므로 남성이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인식), 보완적 성역할 분화(여성은 남성이 가지지 못하는 좋은 특성-순수함, 성적 도덕성 등-을 가졌으며, 남성이 할 수 없는 사회적 역할-자녀 양육, 가사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 친밀한 이성애(남성은 여성과의 사랑을 통해서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인식)의 세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가적 성차별 주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K-MSI 척도 전체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0이었으며, 적대적 성차별 의식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온정적 성차별 의식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11번 문항을 제거할 경우 .78에서 .86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11번 문항을 제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온정적 성차별 의식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6이었다.

2) 성희롱 상황 시나리오

성희롱 상황 시나리오는 하혜숙과 김계현(2007)이 대학 내 공식기구(성희롱·성폭력 상담소)의 상담이나 여학생 모임 등의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된 사례들을 유형화한 것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성희롱의 행위유형과 피해자의 대처 수준에 따라 각색하여 4가지로 유형화한 것이며, 피해자의 조건과 가해자의 관계유형은 시나리오마다 모두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또한 본 시나리오가 척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총 46명의 대학생(남 20명, 여 26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에게 시나리오별로 각 시나리오에 서술된 사례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지와 피해자의 대처가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띠고 있는지를 9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전자는 점수가 높아질수록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점수가 높아질수록 피해자의 대처가 적극적이라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언어형 성희롱 시나리오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 평균은 7.93, 표준편차는 1.29로 나타났으며, 신체형 성희롱 시나리오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 평균은 7.72, 표준편차는 1.23으로 나타나, 본 시나리오는 충분히 성희롱이라 여겨지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대처가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띠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소극적 대처 시나리오일 경우 응답 평균이 2.63, 표준편차는 1.20으로 나타났으며, 적극적 대처 시나리오일 경우 응답 평균이 7.91, 표준편차는 1.11로 나타나, 시나리오가 연구자가 의도한 대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나리오가 연구자가 의도한 대로의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응답자들에게 각 시나리오별로 성희롱 피해자의 성희롱 발생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를 “책임이 전혀 없다(1점)”부터 “전적인 책임이 있다(5점)”의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피해자의 행동이 얼마나 비난 받아야 하는지를 “전혀 비난받지 않아야 한다(1점)”부터 “전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5점)”의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더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를 “책임이 전혀 없다(1점)”부터 “전적인 책임이 있다(5점)”의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제작한 유형별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①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여대생 A양은 평소 남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며 노출이 심한 옷을 즐겨 입는 편이다. 어느 날, 강의 시간에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자 선배가 “과에 그렇잖아도 남자가 많아서 칙칙한데 분위기 화사하게 너라도 좀 예쁘게 꾸며야 학교 오는 낙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A양은 순간 기분이 상했지만 학과 내 선후배 서열이 엄격한데다 앞으로도 계속 볼 사이인 선배에게 화를 내기는 어려워 뭐라 대꾸하진 못하고 그냥 힘없이 웃어보였다.

②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여대생 B양은 평소 남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며 노출이 심한 옷을 즐겨 입는 편이다. 어느 날, 학과 모임 술자리에서 옆에 앉은 남자 선배가 자신의 어깨를 감싸자, B양은 주변에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선배에게 화를 내며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신고하겠다고 다그쳤다.

③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여대생 C양은 평소 남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며 노출이 심한 옷을 즐겨 입는 편이다. 어느 날, 강의 시간에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자 선배가 “과에 그렇잖아도 남자가 많아서 칙칙한데 분위기 화사하게 너라도 좀 예쁘게 꾸며야 학교 오는 낙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그러자 C양은 주변에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선배에게 화를 내며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신고하겠다고 다그쳤다.

④ 신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여대생 D양은 평소 남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며 노출이 심한 옷을 즐겨 입는 편이다. 어느 날, 학과 모임 술자리에서 옆에 앉은 남자 선배가 자신의 어깨를 감싸자, D양은 순간 기분이 상했지만 학과 내 선후배 서열이 엄격한데다 앞으로 계속 볼 사이인 선배에게 화를 내기는 어려워 뭐라 대꾸하진 못하고 그냥 힘없이 웃어보였다.

3) 성희롱 통념 척도

성희롱 통념의 수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정인, 손영미, 김효창(2006)이 김정인, 최상진, 손영미(2001)의 연구에서 확인된 성희롱 통념과 성폭력 및 성희롱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개되고 있는 통념들을 취합한 뒤 문항 내용의 타당성과 중복을 고려해 네 문항을 삭제하여 제작한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 과잉반응 요인 7문항(“성희롱을 당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사실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성희롱 사건은 성적인 농담을 여성들이 과잉반응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등), 행위오해 요인 7문항(“우리 사회의 통념상 가벼운 신체접촉이나 성적 농담은 수용해야 한다.”, “남자가 매력적인 여성에게 성적인 유혹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등), 피해자 책임 요인 6문항(“여자가 정숙하다면 성희롱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성희롱은 피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등), 피해과소평가 요인 4문항(“성희롱 문제제기로 고용상 혹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여성은 거의 없다”, “성희롱을 거부한다고 해서 직장(학교)에서 인사상(학점)의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희롱 통념 수용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Hayes(2013)의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먼저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구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구하였다. 또, 연구에 사용된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각 변인들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별의 상호작용이 성희롱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을 성희롱 통념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단계적 접근법'과 Muller(2005) 등이 제안한 것과 동일한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방법(정선호, 서동기, 2016)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SPSS 21.0 프로그램과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조절변수가 투입되지 않은 단순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PROCESS의 모델4를 사용한 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PROCESS의 모델1을 이용해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PROCESS의 모델 59를 사용하여 조절변수와 매개변수가 투입된 조건화 모형에서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했다. 매개된 조절효과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이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개된 조절효과에 있어 조건부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모수의 분포를 알지 못할 때 통계치를 반복적으로 계산함으로써 모수의 분포를 경험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인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할 시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때 유의도 .05 수준에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V. 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및 성별 간 차이 분석

1)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 및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우선 측정 자료의 정규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Kline(2010)은 왜도는 절대값 3 이내, 첨도는 절대값 10 이내일 때 정상성 가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몇몇 종속변수(시나리오별 피해자 책임, 피해자 비난 경향성)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정상성 가정 기준을 초과하여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없어 그러한 변수들은 로그변환을 하여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모든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가 정상성 가정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되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 조건별 성희롱 피해자 책임, 피해자 비난, 가해자 책임 정도 간에는 모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p < .05$). 먼저 양가적 성차별 주의를 성희롱 통념($r = .772, p < .001$),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피해자 책임($r = .330, p < .001$),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피해자 책임($r = .390, p < .001$),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피해자 책임($r = .430, p < .001$), 신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피해자 책임($r = .275, p < .0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피해자 비난($r = .333, p < .001$),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피해자 비난($r=.375, p<.001$),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피해자 비난($r=.454, p<.001$) 신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피해자 비난($r=.284, p<.001$)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가해자 책임($r=-.419, p<.001$);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가해자 책임($r=-.262, p<.001$),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가해자 책임($r=-.403, p<.001$), 신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가해자 책임($r=-.286, p<.0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양가적 성차별 주의가 높을 수록 성희롱 통념 수용도가 높고,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신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네 가지 상황에서 모두 성희롱 발생 책임을 피해자에게 더 전가하며, 피해자를 더 비난하고, 가해자에게는 성희롱 발생 책임을 덜 부여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양가적 성차별 주의의 두 하위요인별로 살펴보았을 때, 적대적 성차별 주의는 성희롱 통념($r=.804, p<.001$),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피해자 책임($r=.356, p<.001$),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피해자 책임($r=.431, p<.001$),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피해자 책임($r=.467, p<.001$), 신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피해자 책임($r=.292, p<.0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피해자 비난($r=.359, p<.001$),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피해자 비난($r=.354, p<.001$),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피해자 비난($r=.470, p<.001$), 신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피해자 비난($r=.290, p<.001$)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가해자 책임($r=-.416, p<.001$),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가해자 책임($r=-.300, p<.001$),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가해자 책임($r=-.424, p<.001$), 신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가해자 책임($r=-.316, p<.0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높을수록 성희롱 통념 수용도가 높고,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신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네 가지 상황에서 모두 성희롱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피해자를 더 비난하고, 가해자에게는 성희롱 발생의 책임을 덜 부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온정적 성차별 주의 역시 성희롱 통념($r=.610, p<.001$),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피해자 책임($r=.248, p<.001$),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피해자 책임($r=.281, p<.001$),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피해자 책임($r=.361, p<.001$), 신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피해자 책임($r=.231, p<.0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피해자 비난($r=.248, p<.001$),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피해자 비난($r=.281, p<.001$),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피해자 비난($r=.361, p<.001$), 신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피해자 비난($r=.231, p<.001$)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가해자 책임($r=-.353, p<.001$),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가해자 책임($r=-.178, p<.01$),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가해자 책임($r=-.314, p<.001$), 신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가해자 책임($r=-.207, p<.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높을수록 성희롱 통념이 높고,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신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네 가지 상황에서 모두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생의 책임을 더 돌리며, 피해자를 더 비난

하고, 가해자에게는 성희롱 발생의 책임을 덜 부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희롱 통념은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피해자 책임 ($r=.422, p<.001$),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피해자 책임 ($r=.458, p<.001$),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피해자 책임 ($r=.511, p<.001$), 신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피해자 책임 ($r=.357, p<.0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피해자 비난($r=.339, p<.001$),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피해자 비난($r=.473, p<.001$),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피해자 비난($r=.569, p<.001$), 신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피해자 비난($r=.319, p<.001$)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가해자 책임($r=-.524, p<.001$),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가해자 책임($r=-.347, p<.001$),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가해자 책임($r=-.542, p<.001$), 신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가해자 책임($r=-.367, p<.0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성희롱 통념이 높을수록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신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네 가지 상황에서 모두 피해자에게 더 성희롱 발생의 책임을 돌리며, 피해자를 더 비난하고, 가해자에게는 성희롱 발생의 책임을 덜 부여하는 경향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인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 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r=.772, p<.001$) 다중공선성을 우려하여 VIF 지표를 살펴본 결과, VIF=2.471, 공차한계(Tolerance)는 .405로 다중공선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양가적 성차별 주의 중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 간 상관관계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나($r=.804, p<.001$) 역시 VIF 지표를 살펴본 결과, VIF=2.824, 공차한계(Tolerance)는 .354로 다중공

선성을 보이지 않았다.

표 1. 양가적 성차별 주의, 성희롱 통념, 조건별 피해자 책임, 피해자 비난, 가해자 책임 간 상관분석과 기술통계 (N=263)

	1	1a	1b	2	3a	3b	3c	4a	4b	4c	5a	5b	5c	6a	6b	6c
1 양가적 성차별 주의	-															
1a 적대적 성차별 주의	.92***	-														
1b 온정적 성차별 주의	.92***	.69***	-													
2 성희롱 통념	.77***	.80***	.61***	-												
3a 피해자 책임 (언어형-소극적)	.33***	.36***	.25***	.42***	-											
3b 피해자 비난 (언어형-소극적)	.33***	.36***	.25***	.34***	.55***	-										
3c 가해자 책임 (언어형-소극적)	-.42***	-.42***	-.35***	-.52***	-.20**	-.14*	-									
4a 피해자 책임 (신체형-적극적)	.39***	.43***	.28***	.46***	.50***	.32***	-.24***	-								
4b 피해자 비난 (신체형-적극적)	.38***	.35***	.34***	.47***	.35***	.28***	-.34***	.60***	-							
4c 가해자 책임 (신체형-적극적)	-.26***	-.30***	-.18**	-.35***	-.22***	-.15*	.49***	-.47***	-.53***	-						
5a 피해자 책임 (언어형-적극적)	.43***	.47***	.32***	.51***	.50***	.36***	-.39***	.66***	.55***	-.37***	-					
5b 피해자 비난 (언어형-적극적)	.45***	.47***	.36***	.57***	.34***	.28***	-.41***	.49***	.63***	-.39***	.69***	-				
5c 가해자 책임 (언어형-적극적)	-.40***	-.42***	-.31***	-.54***	-.27***	-.20**	.78***	-.45***	-.45***	.66***	-.57***	-.55***	-			
6a 피해자 책임 (신체형-소극적)	.28***	.29***	.21***	.36***	.51***	.30***	-.23***	.36***	.32***	-.15*	.39***	.26***	-.25***	-		
6b 피해자 비난 (신체형-소극적)	.28***	.29***	.23***	.32***	.40***	.54***	-.15*	.29***	.28***	-.21**	.30***	.20**	-.20**	.58***	-	
6c 가해자 책임 (신체형-소극적)	-.29***	-.31***	-.21**	-.37***	-.30***	-.15*	.54***	-.34***	-.34***	.73***	-.30***	-.33***	.57***	-.26***	-.24***	-
평균(M)	1.79	1.61	1.98	1.72	.17	.13	4.12	.18	.18	4.41	.23	.25	4.14	.26	.19	4.45
표준편차(SD)	.58	.62	.65	.54	.34	.31	1.00	.36	.34	.82	.40	.42	1.06	.40	.36	.85
왜도	.84	1.27	.69	1.11	1.76	2.46	-1.38	1.77	1.70	-1.67	1.48	1.40	-1.31	1.14	1.79	-1.93
첨도	.24	2.02	.14	1.31	1.94	5.58	1.72	2.08	1.76	3.18	1.16	.89	1.22	.14	2.34	4.02

* $p < .05$, ** $p < .01$, *** $p < .001$

2) 성별 간 차이 분석

성별에 따른 각 변수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독립표본 t -검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양가적 성차별 주의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158.94)=11.50, p<.001$).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양가적 성차별 주의를 보이고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적대적 성차별 주의($t(149.23)=11.41, p<.001$)와 온정적 성차별 주의($t(171.64)=8.91, p<.001$) 모두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온정적 성차별 주의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별에 따른 성희롱 통념의 수용도 간 차이 역시 유의하였는데($t(145.39)=11.08, p<.001$),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희롱 통념을 유의하게 더 많이 수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의 경우,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정도($t(165.61)=2.88, p<.01$)와 비난하는 정도($t(161.99)=2.72, p<.01$),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정도($t(159.03)=-4.36, p<.001$)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언어형 성희롱 상황에서 성희롱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경우에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에게 유의하게 책임을 더 묻고, 피해자를 더 비난하며, 가해자에게 책임을 덜 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의 경우,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정도($t(151.57)=3.94, p<.001$)와 비난하는 정도($t(151.17)=5.08, p<.001$),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정도($t(176.81)=-2.49, p<.05$)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신체형 성희롱 상황에서 성희롱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한 경우에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에게 유의하게 책임을 더 묻고, 피해자를 더 비난하며, 가해자에게 책임을 덜 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의 경우,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정도

($t(147.52)=5.31, p<.001$)와 비난하는 정도($t(147.36)=6.48, p<.001$),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정도($t(161.99)=-4.76, p<.001$)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언어형 성희롱 상황에서 성희롱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경우에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에게 유의하게 책임을 더 묻고, 피해자를 더 비난하며, 가해자에게 책임을 덜 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신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의 경우,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정도($t(191.66)=3.23, p<.01$)와 비난하는 정도($t(177.88)=2.78, p<.01$),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정도($t(175.99)=-2.17, p<.05$)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언어형 성희롱 상황에서 성희롱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경우에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에게 유의하게 책임을 더 묻고, 피해자를 더 비난하며, 가해자에게 책임을 덜 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성별을 집단변수로 한 독립표본 *t*-검증

(*N*=263)

	여자(<i>N</i> =157)	남자(<i>N</i> =106)	<i>t</i>
	<i>M</i> (<i>SD</i>)	<i>M</i> (<i>SD</i>)	
양가적 성차별 주의	1.50 (.36)	2.22 (.58)	11.50***
적대적 성차별 주의	1.30 (.35)	2.08 (.64)	11.41***
온정적 성차별 주의	1.71 (.47)	2.38 (.68)	8.91***
성희롱 통념	1.45 (.30)	2.12 (.57)	11.08***
피해자 책임(언어형-소극적)	.12 (.27)	.25 (.42)	2.88**
피해자 비난(언어형-소극적)	.08 (.24)	.20 (.38)	2.72**
가해자 책임(언어형-소극적)	4.35 (.75)	3.77 (1.21)	-4.36***
피해자 책임(신체형-적극적)	.10 (.25)	.29 (.44)	3.94***
피해자 비난(신체형-적극적)	.08 (.24)	.31 (.42)	5.08***
가해자 책임(신체형-적극적)	4.52 (.69)	4.25 (.96)	-2.49*
피해자 책임(언어형-적극적)	.12 (.27)	.40 (.49)	5.31***
피해자 비난(언어형-적극적)	.11 (.27)	.46 (.50)	6.48***
가해자 책임(언어형-적극적)	4.40 (.80)	3.75 (1.26)	-4.76***
피해자 책임(신체형-소극적)	.20 (.35)	.36 (.44)	3.23**
피해자 비난(신체형-소극적)	.13 (.31)	.26 (.42)	2.78**
가해자 책임(신체형-소극적)	4.55 (.72)	4.30 (1.01)	-2.17*

* *p*<.05, ** *p*<.01, *** *p*<.001

2. 매개효과 검증

1)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성희롱 피해자 비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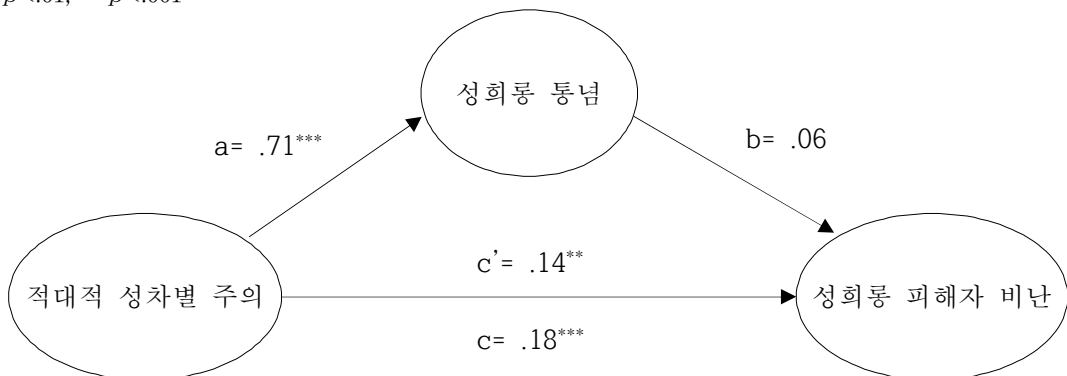
(1)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언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경우, 양가적 성차별 주의 중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를 SPSS Macro에서 제공하는 모델 4를 활용하여 분석한 뒤, 그 결과를 표 3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을 준거 변인으로 하고 예측변인으로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을 추가한 회귀모형은 $\alpha=.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F(2,260)=19.93, p<.001$).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통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B=.71, t(1,261)=21.82, p<.001$), 매개변수인 성희롱 통념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적대적 성차별 주의는 성희롱 피해자 비난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B=.14, t(2,260)=2.83, p<.01$). 그러나 성희롱 통념 수준은 성희롱 피해자 비난 정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B=.06, t(2,260)=1.08, p>.05$). 즉, 언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상황일 경우,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은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의 경우 회귀분석에 의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수: 적대적 성차별 주의) (N=263)

경로	B	SE	t
적대적 성차별 주의 -> 성희롱 통념	.71	.03	21.82***
적대적 성차별 주의 -> 성희롱 피해자 비난	.18	.03	6.22***
적대적 성차별 주의 -> 성희롱 피해자 비난 (성희롱 통념 통제)	.14	.05	2.83**
성희롱 통념 -> 성희롱 피해자 비난 (적대적 성차별 주의 통제)	.06	.06	1.08

** $p < .01$, *** $p < .001$



주. 직접경로 위(c')는 직접효과계수, 아래(c)는 총효과계수임.

그림 2.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의 경우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2)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언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경우, 양가적 성차별 주의 중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를 SPSS Macro에서 제공하는 모델 4를 활용하여 분석한 뒤, 그 결과를 표 4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을 준거 변인으로 하고 예측변인으로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을 추가한 회귀모형은 $\alpha=.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F(2,260)=16.14, p<.001$). 성희롱 통념 수준은 성희롱 피해자 비난 정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B=.16, t(2,260)=3.74, p<.001$),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통념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B=.51, t(1,261)=12.44, p<.001$), 매개변수인 성희롱 통념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 온정적 성차별 주의는 더 이상 성희롱 피해자 비난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B=.04, t(2,260)=1.11, p>.05$). 즉, 언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상황일 경우,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은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통념을 거쳐 성희롱 피해자 비난 정도에 미치는 완전매개모형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 변화량의 11%를 설명하였다 ($F(2,260)=16.14,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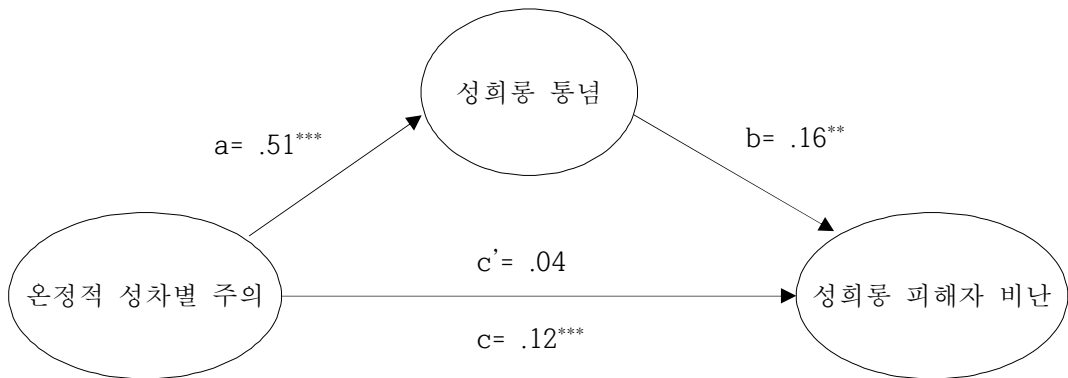
이러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간접효과=.08, $SE=.04$, 95% CI: .02~.15). 따라서 언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상황

일 경우, 성희롱 통념은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완전매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의 경우 회귀분석에 의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수: 온정적 성차별 주의) (N=263)

경로		B	SE	t
온정적 성차별 주의 -> 성희롱 통념		.51	.04	12.44***
온정적 성차별 주의 -> 성희롱 피해자 비난		.12	.03	4.17***
온정적 성차별 주의 -> 성희롱 피해자 비난 (성희롱 통념 통제)		.04	.04	1.11
성희롱 통념 -> 성희롱 피해자 비난 (온정적 성차별 주의 통제)		.16	.04	3.74**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1000)
매개변인	간접효과	Boot SE	LLCI	ULCI
성희롱 통념	.08	.04	.02	.15

** $p < .01$, *** $p < .001$



주. 직접경로 위(c')는 직접효과계수, 아래(c)는 총효과계수임.

그림 3.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2)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성희롱 피해자 비난

(1)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신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한 경우, 양가적 성차별 주의 중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를 SPSS Macro에서 제공하는 모델 4를 활용하여 분석한 뒤, 그 결과를 표 5와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을 준거 변인으로 하고 예측변인으로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을 추가한 회귀모형은 $\alpha=.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F(2,260)=35.63, p<.001$). 성희롱 통념 수준은 성희롱 피해자 비난 정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B=.32, t(2,260)=5.46, p<.001$),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통념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B=.71,$

$t(1,261)=21.82, p<.001$), 매개변수인 성희롱 통념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 적대적 성차별 주의는 더 이상 성희롱 피해자 비난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B=-.03, t(2,260)=-.56, p>.05$). 즉, 신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한 상황일 경우,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은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통념을 거쳐 성희롱 피해자 비난 정도에 미치는 완전매개모형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 변화량의 22%를 설명하였다($F(2,260)=35.63,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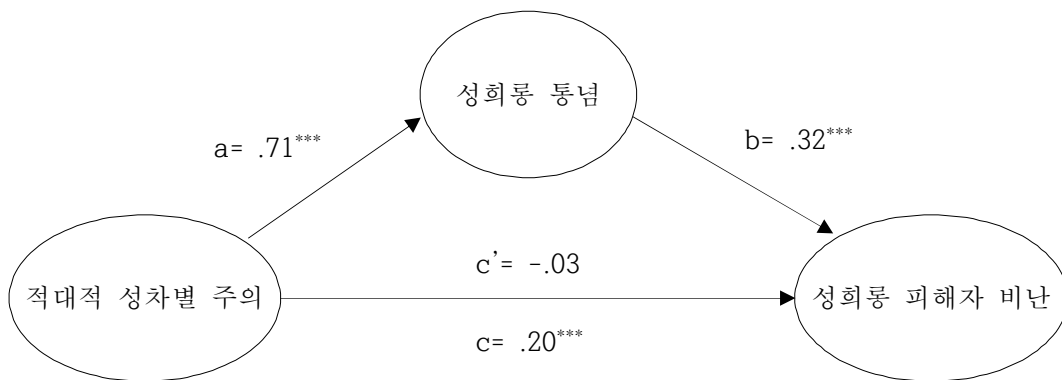
이러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간접효과=.22, $SE=05$, 95% CI: .12~.33). 따라서 신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한 상황일 경우, 성희롱 통념은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완전매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회귀분석에 의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수: 적대적 성차별 주의) (N=263)

경로	B	SE	t
적대적 성차별 주의 → 성희롱 통념	.71	.03	21.82***
적대적 성차별 주의 → 성희롱 피해자 비난	.20	.03	6.11***
적대적 성차별 주의 → 성희롱 피해자 비난 (성희롱 통념 통제)	-.03	.05	-.56
성희롱 통념 → 성희롱 피해자 비난 (적대적 성차별 주의 통제)	.32	.06	5.46***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1000)				
매개변인	간접효과	Boot SE	LLCI	ULCI
성희롱 통념	.22	.05	.12	.33

*** $p < .001$



주. 직접경로 위(c')는 직접효과계수, 아래(c)는 총효과계수임.

그림 4.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2)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신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한 경우, 양가적 성차별 주의 중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를 SPSS Macro에서 제공하는 모델 4를 활용하여 분석한 뒤, 그 결과를 표 6과 그림 5에 제시하였다.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을 준거 변인으로 하고 예측변인으로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을 추가한 회귀모형은 $\alpha=.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F(2,260)=36.37, p<.001$). 성희롱 통념 수준은 성희롱 피해자 비난 정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B=.26, t(2,260)=5.95, p<.001$),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통념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B=.51, t(1,261)=12.44, p<.001$), 매개변수인 성희롱 통념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 온정적 성차별 주의는 더 이상 성희롱 피해자 비난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B=.04, t(2,260)=1.21, p>.05$). 즉, 신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한 상황일 경우,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은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통념을 거쳐 성희롱 피해자 비난 정도에 미치는 완전매개모형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 변화량의 22%를 설명하였다 ($F(2,260)=36.37,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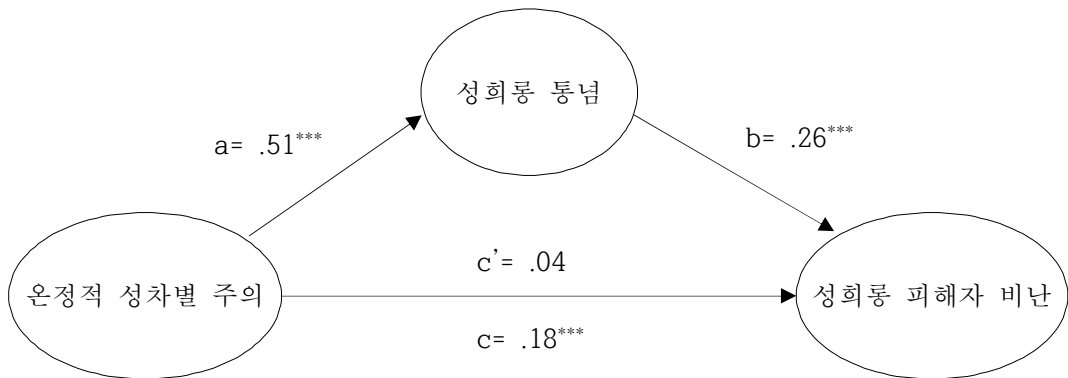
이러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간접효과=.13, $SE=.04$, 95% CI: .07~.22). 따라서 신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한 상황

일 경우, 성희롱 통념은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완전매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6.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회귀분석에 의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수: 온정적 성차별 주의) (N=263)

경로		B	SE	t
온정적 성차별 주의 -> 성희롱 통념		.51	.04	12.44***
온정적 성차별 주의 -> 성희롱 피해자 비난		.18	.03	5.74***
온정적 성차별 주의 -> 성희롱 피해자 비난 (성희롱 통념 통제)		.04	.04	1.21
성희롱 통념 -> 성희롱 피해자 비난 (온정적 성차별 주의 통제)		.26	.04	5.95***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1000)
매개변인	간접효과	Boot SE	LLCI	ULCI
성희롱 통념	.13	.04	.07	.22

*** $p < .001$



주. 직접경로 위(c')는 직접효과계수, 아래(c)는 총효과계수임.

그림 5.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3)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성희롱 피해자 비난

(1)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언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한 경우, 양가적 성차별 주의 중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를 SPSS Macro에서 제공하는 모델 4를 활용하여 분석한 뒤, 그 결과를 표 7과 그림 6에 제시하였다.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을 준거 변인으로 하고 예측변인으로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을 추가한 회귀모형은 $\alpha=.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F(2,260)=58.72, p<.001$). 성희롱 통념 수준은 성희롱 피해자 비난 정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B=.39, t(2,260)=5.85, p<.001$),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통념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B=.71,$

$t(1,261)=21.82, p<.001$), 매개변수인 성희롱 통념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 적대적 성차별 주의는 더 이상 성희롱 피해자 비난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B=.04, t(2,260)=.73, p>.05$). 즉, 언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한 상황일 경우,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은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통념을 거쳐 성희롱 피해자 비난 정도에 미치는 완전매개모형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 변화량의 31%를 설명하였다($F(2,260)=58.72,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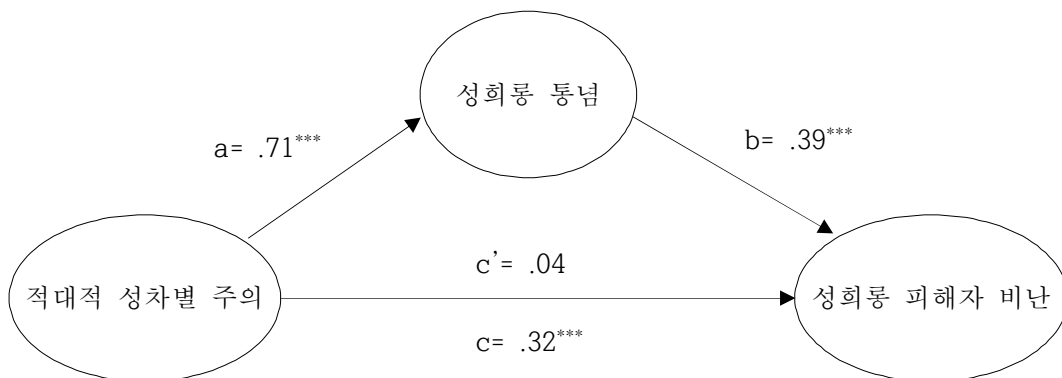
이러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간접효과=.27, $SE=05$, 95% CI: .18~.39). 따라서 언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한 상황일 경우, 성희롱 통념은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완전매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7.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회귀분석에 의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수: 적대적 성차별 주의) (N=263)

경로	B	SE	t
적대적 성차별 주의 → 성희롱 통념	.71	.03	21.82***
적대적 성차별 주의 → 성희롱 피해자 비난	.32	.04	8.60***
적대적 성차별 주의 → 성희롱 피해자 비난 (성희롱 통념 통제)	.04	.06	.73
성희롱 통념 → 성희롱 피해자 비난 (적대적 성차별 주의 통제)	.39	.07	5.85***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1000)				
매개변인	간접효과	Boot SE	LLCI	ULCI
성희롱 통념	.27	.05	.18	.39

*** $p < .001$



주. 직접경로 위(c')는 직접효과계수, 아래(c)는 총효과계수임.

그림 6.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2)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언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한 경우, 양가적 성차별 주의 중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를 SPSS Macro에서 제공하는 모델 4를 활용하여 분석한 뒤, 그 결과를 표 8과 그림 7에 제시하였다.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을 준거 변인으로 하고 예측변인으로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을 추가한 회귀모형은 $\alpha=.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F(2,260)=58.55, p<.001$). 성희롱 통념 수준은 성희롱 피해자 비난 정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B=.41, t(2,260)=8.23, p<.001$),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통념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B=.51, t(1,261)=12.44, p<.001$), 매개변수인 성희롱 통념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 온정적 성차별 주의는 더 이상 성희롱 피해자 비난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B=.02, t(2,260)=.54, p>.05$). 즉, 언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한 상황일 경우,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은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통념을 거쳐 성희롱 피해자 비난 정도에 미치는 완전매개모형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 변화량의 31%를 설명하였다 ($F(2,260)=58.5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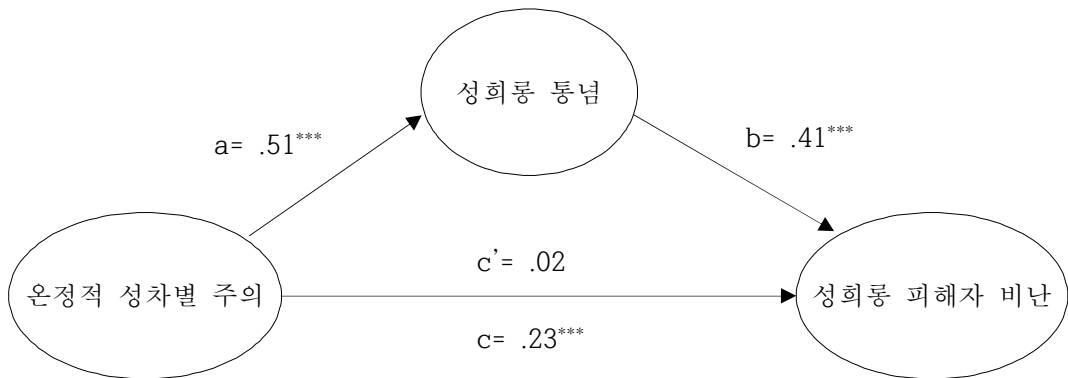
이러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간접효과=.21, $SE=.04$, 95% CI: .14~.28). 따라서 언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한 상황

일 경우, 성희롱 통념은 긍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완전매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8.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회귀분석에 의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수: 긍정적 성차별 주의) (N=263)

경로		B	SE	t
긍정적 성차별 주의 -> 성희롱 통념		.51	.04	12.44***
긍정적 성차별 주의 -> 성희롱 피해자 비난		.23	.04	6.26***
긍정적 성차별 주의 -> 성희롱 피해자 비난 (성희롱 통념 통제)		.02	.04	.54
성희롱 통념 -> 성희롱 피해자 비난 (긍정적 성차별 주의 통제)		.41	.05	8.23***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1000)
매개변인	간접효과	Boot SE	LLCI	ULCI
성희롱 통념	.21	.04	.14	.28

*** $p < .001$



주. 직접경로 위(c')는 직접효과계수, 아래(c)는 총효과계수임.

그림 7.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4) 신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성희롱 피해자 비난

(1)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신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경우, 양가적 성차별 주의 중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를 SPSS Macro에서 제공하는 모델 4를 활용하여 분석한 뒤, 그 결과를 표 9와 그림 8에 제시하였다.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을 준거 변인으로 하고 예측변인으로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을 추가한 회귀모형은 $\alpha=.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F(2,260)=15.95, p<.001$). 성희롱 통념 수준은 성희롱 피해자 비난 정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B=.18, t(2,260)=2.71, p<.01$),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통념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B=.71,$

$t(1,261)=21.82, p<.001$), 매개변수인 성희롱 통념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 적대적 성차별 주의는 더 이상 성희롱 피해자 비난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B=.04, t(2,260)=.77, p>.05$). 즉, 신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상황일 경우,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은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통념을 거쳐 성희롱 피해자 비난 정도에 미치는 완전매개모형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 변화량의 11%를 설명하였다($F(2,260)=15.9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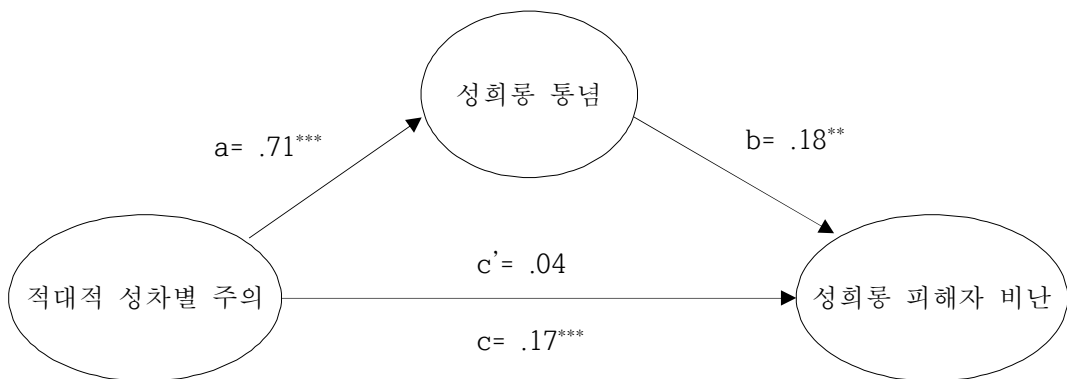
이러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간접효과=.13, $SE=05$, 95% CI: .02~.23). 따라서 신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상황일 경우, 성희롱 통념은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완전매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9. 신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의 경우 회귀분석에 의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수: 적대적 성차별 주의) (N=263)

경로	B	SE	t
적대적 성차별 주의 -> 성희롱 통념	.71	.03	21.82***
적대적 성차별 주의 -> 성희롱 피해자 비난	.17	.04	4.90***
적대적 성차별 주의 -> 성희롱 피해자 비난 (성희롱 통념 통제)	.04	.06	.77
성희롱 통념 -> 성희롱 피해자 비난 (적대적 성차별 주의 통제)	.18	.07	2.71**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1000)				
매개변인	간접효과	Boot SE	LLCI	ULCI
성희롱 통념	.13	.05	.02	.23

** $p < .01$, *** $p < .001$



주. 직접경로 위(c')는 직접효과계수, 아래(c)는 총효과계수임.

그림 8. 신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의 경우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2)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신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경우, 양가적 성차별 주의 중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를 SPSS Macro에서 제공하는 모델 4를 활용하여 분석한 뒤, 그 결과를 표 10과 그림 9에 제시하였다.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을 준거 변인으로 하고 예측변인으로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을 추가한 회귀모형은 $\alpha=.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F(2,260)=15.88, p<.001$). 성희롱 통념 수준은 성희롱 피해자 비난 정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B=.20, t(2,260)=4.02, p<.01$),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통념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B=.51, t(1,261)=12.44, p<.001$), 매개변수인 성희롱 통념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 온정적 성차별 주의는 더 이상 성희롱 피해자 비난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B=.03, t(2,260)=.68, p>.05$). 즉, 신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상황일 경우,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은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통념을 거쳐 성희롱 피해자 비난 정도에 미치는 완전매개모형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 변화량의 11%를 설명하였다 ($F(2,260)=15.88,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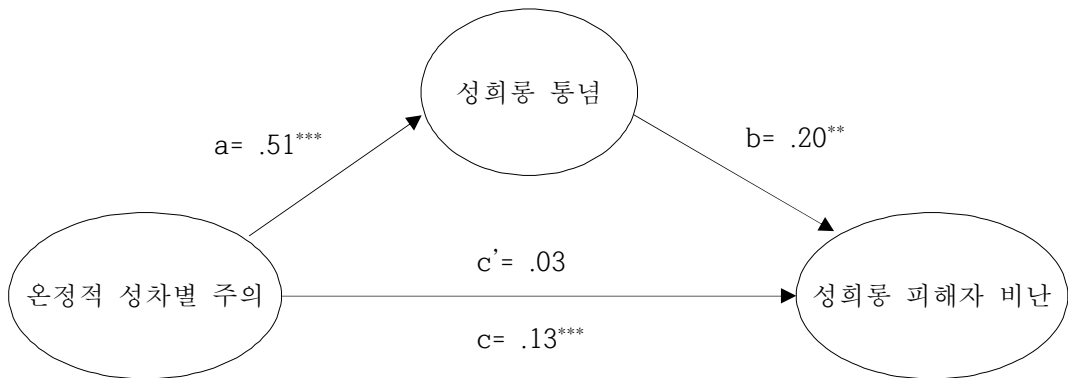
이러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간접효과=.10, $SE=.03$, 95% CI: .05~.16). 따라서 신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상황

일 경우, 성희롱 통념은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완전매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0. 신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의 경우 회귀분석에 의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수: 온정적 성차별 주의) (N=263)

경로	B	SE	t	
온정적 성차별 주의 -> 성희롱 통념	.51	.04	12.44***	
온정적 성차별 주의 -> 성희롱 피해자 비난	.13	.03	3.84***	
온정적 성차별 주의 -> 성희롱 피해자 비난 (성희롱 통념 통제)	.03	.04	.68	
성희롱 통념 -> 성희롱 피해자 비난 (온정적 성차별 주의 통제)	.20	.05	4.02**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1000)	
매개변인	간접효과	Boot SE	LLCI	ULCI
성희롱 통념	.10	.03	.05	.16

** $p < .01$, *** $p < .001$



주. 직접경로 위(c')는 직접효과계수, 아래(c)는 총효과계수임.

그림 9. 신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

3.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

1)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성희롱 피해자 비난

(1)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 효과

언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경우, 양가적 성차별 주의 중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 효과를 SPSS Macro의 모델 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표 11). 성희롱 피해자 비난을 준거 변인으로 한 회귀모형은 $\alpha=.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F(3,259)=14.08, p<.001$). 적대적 성차별 주의의 1단위 증가는 .37 단위의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 수준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적대적 성차별 주의의 변화량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의 14%를 설명하였다

($B=.37, t(3,259)=3.33, p<.01$). 즉, 언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처했을 경우, 성희롱 피해자 비난에 대한 적대적 성차별 주의의 주 효과는 유의하였다. 그러나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는 성별에 따라 변하지 않았다($B=.24, t(3,259)=1.82, p>.05$). 결론적으로, 언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처했을 경우,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B=-.13, t(3,259)=-1.60, p>.05$).

표 11.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의 경우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N=263)

변인	B	SE	t
적대적 성차별 주의	.37	.11	3.33**
성별	.24	.13	1.82
적대적 성차별 주의 × 성별	-.13	.08	-1.60

** $p<.01$

(2)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 효과

언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경우, 양가적 성차별 주의 중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 효과를 SPSS Macro의 모델 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표 12). 성희롱 피해자 비난을 준거 변인으로 한 회귀모형은 $\alpha=.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나($F(3,259)=6.30, p<.01$), 온정적 성차별 주의의 성희롱 피해자 비

난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B=.17, t(3,259)=1.65, p>.05$),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 역시 성별에 따라 변하지 않았다($B=.05, t(3,259)=.33, p>.05$). 결론적으로, 언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처했을 경우,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B=-.05, t(3,259)=-.68, p>.05$).

표 12.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N=263)

변인	<i>B</i>	<i>SE</i>	<i>t</i>
온정적 성차별 주의	.17	.10	1.65
성별	.05	.14	.33
온정적 성차별 주의 × 성별	-.05	.07	-.68

2)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성희롱 피해자 비난

(1)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 효과

신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한 경우, 양가적 성차별 주의 중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 효과를 SPSS Macro의 모델 1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 13에 제시하였다. 먼저 성희롱 피해자 비난을 준거 변인으로 한 회귀모형은 $\alpha=.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나($F(3,259)=14.76, p<.001$), 적대적 성차별 주의의 성희롱 피해자 비난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B=.21, t(3,259)=1.73, p>.05$),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 역시 성별에 따라 변하지 않았다($B=-.04, t(3,259)=-.25, p>.05$). 결론적으로, 신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경우,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B=-.06, t(3,259)=-.65, p>.05$).

표 13.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N=263)

변인	B	SE	t
적대적 성차별 주의	.21	.12	1.73
성별	-.04	.14	-.25
적대적 성차별 주의 × 성별	-.06	.09	-.65

(2)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 효과

신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한 경우, 양가적 성차별 주의 중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 효과를 SPSS Macro의 모델 1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 14에 제시하였다. 성희롱 피해자 비난을 준거 변인으로 한 회귀모형은 $\alpha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F(3,259)=16.55, p<.001$),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15, t(3,259)=-2.17, p<.05$). 즉, 신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경우,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를 성별이 조절하였다.

표 14.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N=263)

변인	B	SE	t
온정적 성차별 주의	.34	.11	3.17**
성별	.16	.15	1.06
온정적 성차별 주의 × 성별	-.15	.07	-2.17*

* $p<.05$, ** $p<.01$

이러한 성별의 조절효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언변인인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평균을 기준으로 상하로 나눈 뒤, 성별에 따른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을 계산하여 그 기울기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그림 2). 그림 2를 보면, 남성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증가할수록 성

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여성의 경우엔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증가하여도 성희롱 피해자 비난 정도에 뚜렷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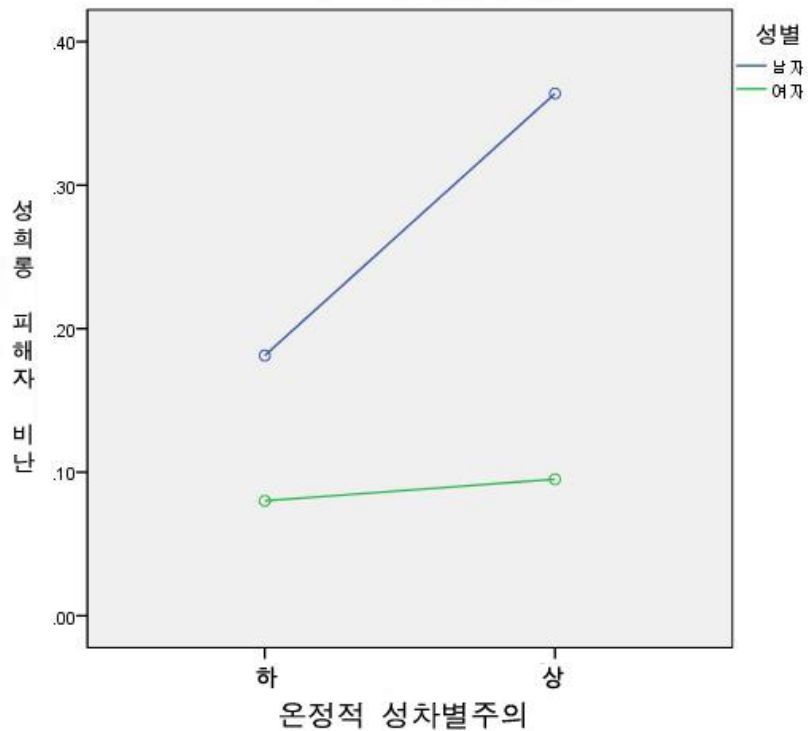


그림 10.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이러한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 성별에 따른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를 표 15에 제시하였다.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의 관계는 남성일 경우에만 유의하고(간접효과=.18, $SE=.04$, 95% CI: .09~.27) 여성일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다(간접효과=.03, $SE=.05$, 95% CI: -.08~.14). 즉, 신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경우, 남성은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높아질수록 성희롱 피해자를 더 비난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여성은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높아지더라도 성희롱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에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표 15.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의 유의성 검증
(독립변수: 온정적 성차별 주의) (N=1000)

	조건부 간접효과	Boot SE	LLCI	ULCI
남자	.18	.05	.09	.27
여자	.03	.05	-.08	.14

3)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성희롱 피해자 비난

(1)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 효과

언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한 경우, 양가적 성차별 주의 중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 효과를 SPSS Macro의 모델 1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 16에 제시하였다. 성희롱 피해자 비난을 준거 변인으로 한 회귀모형은 $\alpha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F(3,259)=30.06, p<.001$),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23, t(3,259)=-2.31, p<.05$). 즉, 언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경우,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를 성별이 조절하였다.

표 16.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N=263)

변인	B	SE	t
적대적 성차별 주의	.54	.14	3.91**
성별	.19	.16	1.17
적대적 성차별 주의 × 성별	-.23	.10	-2.31*

* $p < .05$, ** $p < .01$

이러한 성별의 조절효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언변인인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평균을 기준으로 상하로 나눈 뒤, 성별에 따른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을 계산하여 그 기울기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 3). 그림 3을 보면, 남성의 경우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증가할수록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여성의 경우엔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증가하여도 성희롱 피해자 비난 정도에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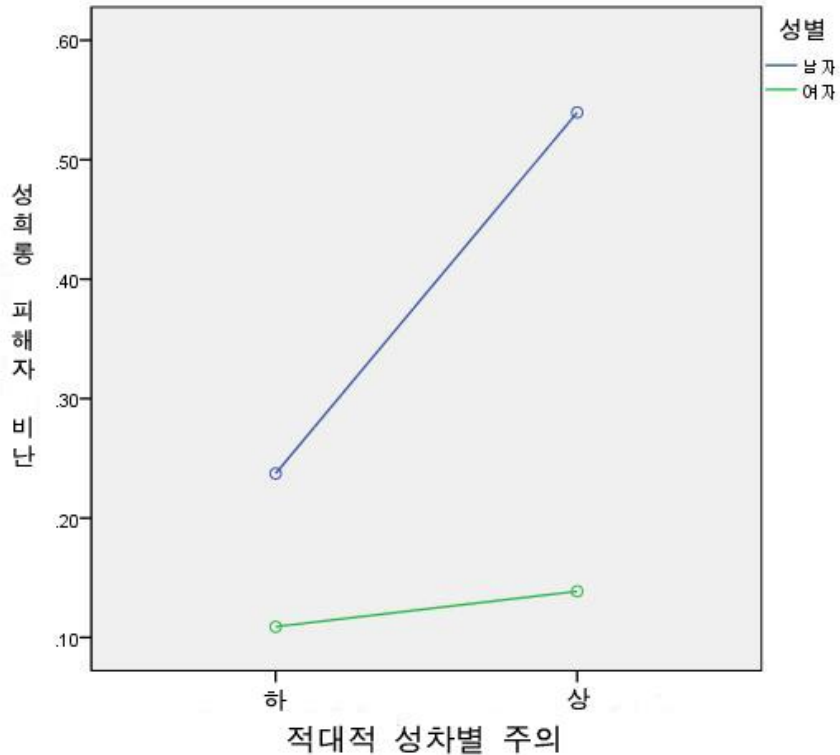


그림 11.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이러한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 성별에 따른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를 표 17에 제시하였다.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의 관계는 남성일 경우에만 유의하고(간접효과=.31, $SE=.06$, 95% CI: .20~.42) 여성일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다(간접효과=.08, $SE=.08$, 95% CI: -.08~.24). 즉, 언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경우, 남성은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높아질수록 성희롱 피해자를 더 비난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여성은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높아지더라도 성희롱 피

해자를 비난하는 경향에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표 17.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의 유의성 검증
(독립변수: 적대적 성차별 주의) (N=1000)

	조건부 간접효과	Boot SE	LLCI	ULCI
남자	.31	.06	.20	.42
여자	.08	.08	-.08	.24

(2)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 효과

언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한 경우, 양가적 성차별 주의 중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 효과를 SPSS Macro의 모델 1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 18에 제시하였다. 성희롱 피해자 비난을 준거 변인으로 한 회귀모형은 $\alpha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F(3,259)=22.19, p<.001$). 온정적 성차별 주의의 1단위 증가는 .31 단위의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 수준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온정적 성차별 주의의 변화량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의 20%를 설명하였다($B=.31, t(3,259)=2.45, p<.05$). 즉, 언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경우, 성희롱 피해자 비난에 대한 온정적 성차별 주의의 주효과는 유의하였다. 그러나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는 성별에 따라 변하지 않았다($B=-.01, t(3,259)=-.06, p>.05$). 결론적으로, 언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경우,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B=-.12, t(3,259)=-1.46, p>.05$).

표 18.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N=263)

변인	B	SE	t
온정적 성차별 주의	.31	.13	2.45*
성별	-.01	.18	-.06
온정적 성차별 주의 × 성별	-.12	.08	-1.46

* $p < .05$

4) 신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성희롱 피해자 비난

(1)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신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경우, 양가적 성차별 주의 중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 효과를 SPSS Macro의 모델 1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 19에 제시하였다. 성희롱 피해자 비난을 준거 변인으로 한 회귀모형은 $\alpha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나($F(3,259)=8.00$ $p < .001$), 적대적 성차별 주의의 성희롱 피해자 비난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B=.22$, $t(3,259)=1.70$, $p > .05$),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 역시 성별에 따라 변하지 않았다($B=.06$, $t(3,259)=.41$, $p > .05$). 결론적으로, 신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처했을 경우,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B=-.04$, $t(3,259)=-.45$, $p > .05$).

표 19. 신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의 경우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N=263)

변인	B	SE	t
적대적 성차별 주의	.22	.13	1.70
성별	.06	.16	.41
적대적 성차별 주의 × 성별	-.04	.09	-.45

(2)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 효과

신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경우, 양가적 성차별 주의 중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 효과를 SPSS Macro의 모델 1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 20에 제시하였다. 성희롱 피해자 비난을 준거 변인으로 한 회귀모형은 $\alpha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나($F(3,259)=6.30, p<.01$), 온정적 성차별 주의의 1단위 증가는 .28 단위의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 수준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온정적 성차별 주의의 변화량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의 7%를 설명하였다($B=.28, t(3,259)=2.41, p<.05$). 즉, 신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처했을 경우, 성희롱 피해자 비난에 대한 온정적 성차별 주의의 주효과는 유의하였다. 그러나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는 성별에 따라 변하지 않았다($B=.19, t(3,259)=1.15, p>.05$). 결론적으로, 신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처했을 경우,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B=-.13, t(3,259)=-1.61, p>.05$).

표 20. 신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N=263)

변인	B	SE	t
온정적 성차별 주의	.28	.12	2.41*
성별	.19	.16	1.15
온정적 성차별 주의 × 성별	-.13	.08	-1.61

* $p < .05$

4.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1)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성희롱 피해자 비난

매개된 조절효과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할 때, 즉 조절효과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앞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난 경우들만을 대상으로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즉, 종속변수가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이고 독립변수가 온정적 성차별 주의인 경우, 그리고 종속변수가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이고 독립변수가 적대적 성차별 주의인 경우의 두 가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일 경우, 양가적 성차별 주의 중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통념을 매개로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이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SPSS Macro에서 제공하는 모델 59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1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성희롱 통념을 준거 변인으로 한 회귀 모형은 $\alpha=.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F(3,259)=85.20, p<.001$). 온정적 성차별 주의의 1단위 증가는 .55 단위의 성희롱 통념 수준의 증가를 가져온 반면 ($B=.55, t(259)=4.18, p<.001$), 성별에 따른 성희롱 통념 수준은 변하지 않았다 ($B=-.16, t(259)=-.86, p>.05$). 즉,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 간 관계를 성별이 조절하지 않았다 ($B=-.15, t(259)=-1.66, p>.05$). 성희롱 통념의 변화량 중 50%는 온정적 성차별 주의 수준의 변화량에 의해 설명 가능하였다. 즉, 성희롱 통념에 대한 온정적 성차별 주의의 유의한 주효과가 있었다.

다음으로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을 준거 변인으로 한 회귀 모형은 $\alpha=.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F(5,257)=15.53, p<.001$). 성별에 따른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은 유의하지 않은 반면 ($B=.29, t(257)=1.60, p>.05$), 성희롱 통념 수준의 1단위 증가는 .35 단위의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B=.35, t(257)=2.40, p<.05$), 성희롱 통념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 온정적 성차별 주의는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B=.17, t(259)=1.50, p>.05$). 또한 성희롱 통념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별의 상호작용(직접조절효과)이 유의하지 않아졌으나 ($B=-.09, t(259)=-1.23, p>.05$),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에 대한 성희롱 통념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아 ($B=-.09, t(257)=-.85, p>.05$) 매개된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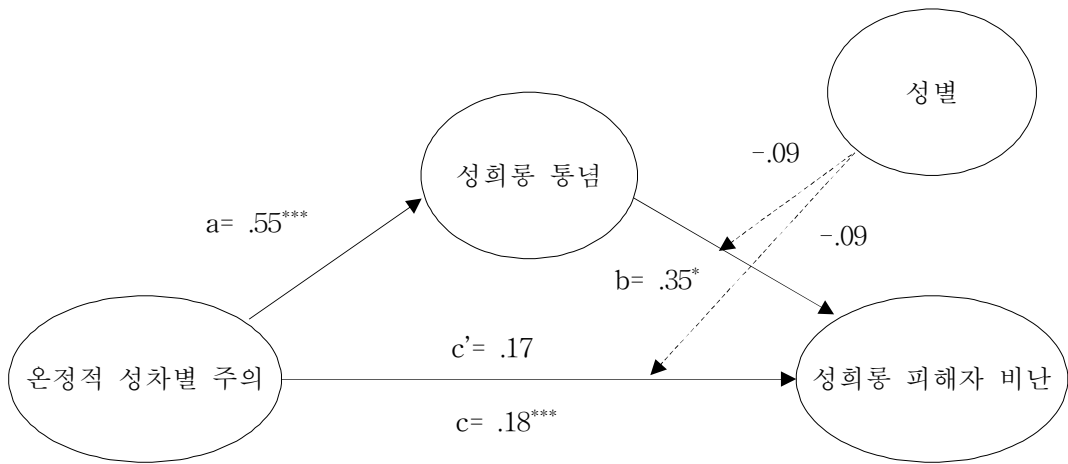
성별에 따라 성희롱 통념이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부트스트랩 기법을 사용해 검증한 결과, 성별에 따른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는 남녀 모두에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조건부 매개 효과가 발생하였으며(간접효과=.10, SE=.05, 95% CI: .04~.23) 여성의 경우에도 발생하였다(간접효과=.04, SE=.03, 95% CI: .01~.12). 즉,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은 남녀 모두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1.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성희롱 통념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독립변수: 온정적 성차별 주의) (N=263)

	결과변수			
	성희롱 통념		성희롱 피해자 비난	
	<i>B</i>	<i>t</i>	<i>B</i>	<i>t</i>
온정적 성차별 주의	.55	4.18***	.17	1.50
성별	-.16	-.86	.29	1.60
온정적 성차별 주의*성별	-.14	-1.66	-.09	.08
성희롱 통념			.35	2.40*
성희롱 통념*성별			-.09	-.85
	조건부 간접효과	Boot <i>SE</i>	LLUI	ULCI
남자	.10	.05	.04	.23
여자	.04	.03	.01	.12

* $p < .05$, *** $p < .001$



주 1. 경로 위(c')는 직접효과계수, 아래(c)는 총효과계수임.

주 2. 실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이며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그림 12.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성희롱 통념이 매개된 성별의 조절모형
(독립변수: 온정적 성차별 주의)

이러한 매개된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기법을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표 22),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여 매개된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95% CI: -.17~.03). 즉,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일 경우,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 간 관계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는 성별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표 22.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매개된 조절효과 유의성 검증

(독립변수: 온정적 성차별 주의)

(N=1000)

변인	간접효과	Boot SE	LLCI	ULCI
성희롱 통념	-.06	.05	-.17	.03

2)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성희롱 피해자 비난

다음으로 종속변수가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의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이고 독립변수가 양가적 성차별 주의 중 적대적 성차별 주의인 경우에만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므로 이 경우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일 경우, 양가적 성차별 주의 중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통념을 매개로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이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SPSS Macro에서 제공하는 모델 59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3과 그림 5에 제시하였다. 성희롱 통념을 준거 변인으로 한 회귀 모형은 $\alpha=.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F(3,259)=178.38, p<.001$). 적대적 성차별 주의의 1단위 증가는 .88 단위의 성희롱 통념 수준의 증가를 가져온 반면 ($B=.88, t(259)=7.44, p<.001$), 성별에 따른 성희롱 통념 수준은 변하지 않았다 ($B=.12, t(259)=.88, p>.05$). 그러나 성희롱 통념에 대한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별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하였다 ($B=-.21, t(259)=-2.46, p<.05$).

다음으로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을 준거 변인으로 한 회귀 모형은 $\alpha=.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F(5,257)=26.78, p<.001$). 성별에 따른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은 유의하였으며 ($B=.44, t(257)=2.32, p<.05$), 성희롱 통념이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였다 ($B=.86, t(257)=4.19, p<.001$). 또한 성희롱 통념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 적대적 성차별 주의는 더 이상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B=-.07, t(259)=-.39, p>.05$).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에 대한 성희롱 통념과 성별의 상호작용은 유의한 반면 ($B=-.37, t(257)=-2.66, p<.01$), 성희롱 통념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별의 상호작용(직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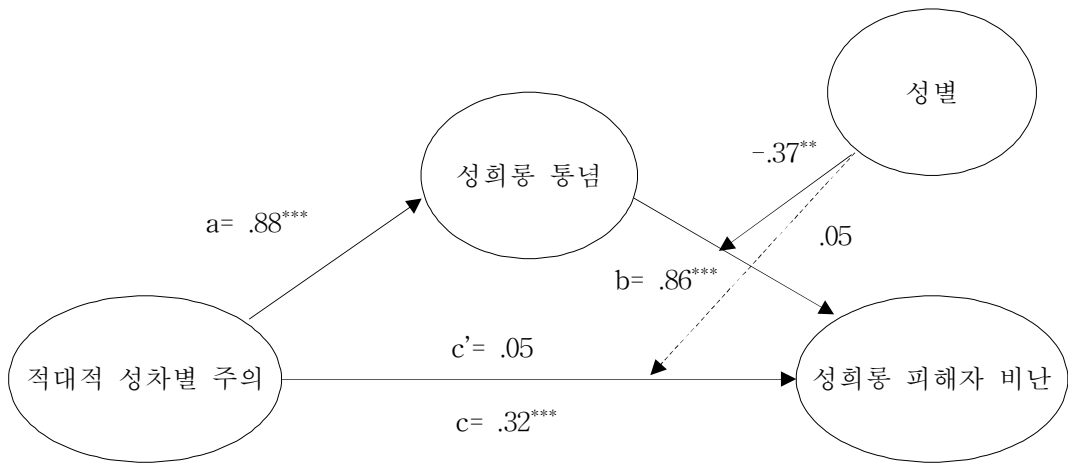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05, t(259)=.39, p>.05$). 즉, 완전 매개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성희롱 통념이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부트스트랩 기법을 사용해 검증한 결과, 성별에 따른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는 남자에서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조건부 매개 효과가 발생하였으나(간접효과=.33, SE=.08, 95% CI: .19~.50), 여성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았다(간접효과=.06, SE=.05, 95% CI: -.02~.16). 즉,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 통념은 남자의 경우에만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성희롱 통념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독립변수: 적대적 성차별 주의) (N=263)

	결과변수			
	성희롱 통념		성희롱 피해자 비난	
	<i>B</i>	<i>t</i>	<i>B</i>	<i>t</i>
적대적 성차별 주의	.88	7.44***	-.07	-.39
성별	.12	.88	.44	2.32*
적대적 성차별 주의*성별	-.21	-2.46*	.05	.39
성희롱 통념			.86	4.19***
성희롱 통념*성별			-.37	-2.66**
	조건부 간접효과	Boot <i>SE</i>	LLUI	ULCI
남자	.33	.08	.19	.50
여자	.06	.05	-.02	.16

* $p<.05$, ** $p<.01$, *** $p<.001$



주 1. 경로 위(c')는 직접효과계수, 아래(c)는 총효과계수임.
 주 2. 실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이며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그림 13.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성희롱 통념이 매개된 성별의 조절모형
 (독립변수: 적대적 성차별 주의)

이러한 매개된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기법을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표 24),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된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95% CI: $-.48 \sim -.10$). 즉,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일 경우,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 간 관계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표 24.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의 경우 매개된 조절효과 유의성 검증
 (독립변수: 적대적 성차별 주의) (N=1000)

변인	간접효과	Boot SE	LLCI	ULCI
성희롱 통념	-.27	.09	-.48	-.10

VI.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양가적 성차별 주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성희롱 피해자 비난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으며,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성희롱의 유형과 피해자의 대처 수준이 다른 네 가지 상황(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신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에서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경로에서 성별에 따른 매개된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자세히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문제 1의 가설 1-1, 1-2, 1-3은 지지되었다. 이는 기존의 강간통념과 강간피해자에 대한 비난 경향성을 대상으로 연구했던 선행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며(이석재, 최상진, 2001; 윤병해, 고재홍, 2006),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에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이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 성희롱 피해자 비난은 성별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은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을 보였으며, 성희롱 피해자에게 책임을 더 돌리고, 피해자를 더 비난하며, 가해자에게 책임을 덜 부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며(김정인, 최상진, 손영미, 2001; 김정인, 손영미, 김효창, 2006; 윤병해, 고재홍, 2006; 최인숙, 김정인, 2015), 성희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과거에 비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통념 수용도가 더 높으며 더 높은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남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통념을 줄여주고, 성희롱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인식을 높여줄 수 있는 성희롱 교육과 개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적대적 성차별 주의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반면 온정적 성차별 주의에서는 남성과 여성 간에 비교적 차이가 덜 나타난다는 결과가 있었으나(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5; 윤병해, 고재홍, 2006), 본 연구에서는 온정적 성차별 주의에서도 남녀 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최근 여성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신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한 경우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경우, 그리고 언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경우 양가적 성차별 주의(적대적 성차별 주의,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를 성희롱 통념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문제 2의 가설 2-1은 일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가적 성차별 주의가 높더라도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아주는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비난 정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언어형 성희롱 상황에서 성희롱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경우에는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만 성희롱 통념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는 매개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는 먼저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의 경우, 성희롱 통념과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에 또 다른 제3의 변인이 존재하여 성희

룡 통념이 성희롱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의 경우에는 성희롱 통념이 아닌 또 다른 변인을 거치는 경로를 통해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신체형 성희롱은 남녀 모두가 성희롱이라 판단한 것과는 달리 언어형 성희롱은 성희롱이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남녀 간에 차이가 나타나며(하혜숙, 김계현, 2007), 적극적 대처에 비해 소극적 대처를 성희롱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경향 또한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김정인, 최상진, 손영미, 2001). 이렇게 다른 조건들에 비해 남녀 간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조건이라 볼 수 있는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의 경우, 성희롱 통념이 아닌 다른 변인이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양돈규와 김정인(2016)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양성평등의식이 더 높고 그에 따라 성희롱 문제인식 수준도 더 높다고 하였으므로 양성평등의식이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에서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온정적 성차별 주의보다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강한 사람이 피해자에 대한 인상 형성이 더욱 부정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최인철, 진정희, 2003), “~했다면/하지 않았다면 ~했을 텐데”와 같이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 뒤에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은 대안적 사건들에 대하여 상상함으로써 사건의 결과를 재평가하는 사고인 사후가정 사고(김성호 외, 2009)가 매개변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는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관련이 높은 변인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매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언어형 성희롱-소극적 대처 상황에서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이러한 변인 이외에도 다른 여러 변인들의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 온정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에 성별의 조절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도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에 성별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문제 3의 가설 3-1은 특정 상황조건(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에서만 지지되었다. 즉, 신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높아질수록 여자 대학생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남자 대학생은 성희롱 피해자 비난 정도가 유의하게 높아졌다. 또, 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 상황에서는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높아질수록 여자 대학생은 역시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남자 대학생은 성희롱 피해자 비난 정도가 유의하게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양가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희롱의 행위유형보다는 피해자의 대처 정도가 남녀 간 비난 정도의 차이에 보다 더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여성을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남성 지배적 권력구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태도라는 점에서, 신체형 성희롱에 자신의 의사를 크고 뚜렷하게 밝히며 적극적으로 대처한 여성 피해자는 온정적 성차별 주의가 높은 남성들의 관점에서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전통적 여성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자에게 더 많은 비난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여성이 남성의 권위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려 하거나 남성에게 비합리적 요구를 한다는 인식에 따른 부정적인 태도라는 점,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신체형 성희롱보다 언어형 성희롱을 성희롱이라고 덜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하혜숙, 김계현, 2007)를 고려할 때, 적대적 성차별 주

의가 높은 남성은 본인의 기준에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언어형 성희롱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피해자가 지나치게 과도한 반응을 한 것이라고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상황에서는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희롱 통념의 매개효과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성별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던 두 가지 경우 중 언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한 경우에서만 성별에 따른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에 완전 매개된 조절효과가 나타나 연구문제 3의 가설 3-2는 특정 상황 조건(언어형 성희롱-적극적 대처)에서만 지지되었다. 다시 말해, 언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경우, 남자 대학생의 경우에만 적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에서 성희롱 통념이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언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경우, 적대적 성차별 주의를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적대적 성차별 주의를 남성의 경우 그 영향력이 유의하게 증가하며, 여성의 경우에는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남성에게는 높은 적대적 성차별 주의를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여자 대학생에게는 그렇지 않은가?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를 매개변수인 성희롱 통념이 설명할 수 있다. 즉, 언어형 성희롱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경우,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높은 여자 대학생은 성희롱 피해자를 비난하는 정도에서 성희롱 통념 수용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지만,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높은 남자 대학

생은 성희롱 통념 수용도가 더욱 높아져 그 결과 성희롱 피해자를 높은 수준으로 비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하였듯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여성이 남성의 권위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려 하거나 남성에게 비합리적 요구를 한다는 인식에 따른 부정적인 태도인 점, 그리고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신체형 성희롱보다 언어형 성희롱을 성희롱이라고 덜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하혜숙, 김계현, 2007)를 고려할 때,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높은 남성은 본인의 기준에서 언어형 성희롱은 희롱할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농담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별 것 아닌’ 상황에서의 여성 피해자의 지나친 대처 행동은 기존의 사회문화적으로 유지되어온 남성의 권위(여성은 신체적 매력을 가꾸어야 하므로 남성이 여성의 외모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에 대한 도전, 혹은 의도적으로 남성에게 어떠한 위해를 입히려는 행동(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거나 고소를 통한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이라고 보았을 수 있다. 그 결과, 성희롱 통념 중 행위오해 및 과잉반응 관련통념이 높아져 성희롱 피해자를 높은 수준으로 비난하는 경향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높은 남자 대학생의 성희롱 피해자 비난 경향성에 있어서 성희롱 통념의 영향력이 여자 대학생에 비해 상당히 강력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성희롱 관련 상담이나 교육에 있어서 성희롱 통념을 바로잡는 개입이 적대적 성차별 주의가 높은 남자 대학생에게 더욱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양가적 성차별 주의가 성희롱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과 메커니즘을 밝히고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함으로써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교육과 상담에 있어서 어떠한 개입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양가적 성차별 주

의와 성희롱 통념 개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양가적 성차별 주의나 성희롱 통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점검하게 한 후 그러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의 수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영화나 드라마, 서적 등을 활용하여 그러한 매체들에 어떠한 잘못된 성희롱 통념이나 양가적 성차별 주의가 드러나고 있는지 찾아보는 활동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자 공감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강간통념을 유의하게 낮췄다는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보아(고정애, 박경, 201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높이는 개입이 성희롱 통념을 유의하게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희롱 사건을 다룬 영상자료에 그려진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역할극 활동, 집단상담, 토론 등을 통해 피해자의 고통에 대하여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또한 의미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학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희롱 관련 교육은 주로 온라인 동영상 시청이나 대규모 강연을 통한 단기적·일회성의 형태가 많아 대학생들의 성의식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실정이다. 따라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각 대학의 필수교양과목으로 지정하거나, 학생생활상담소의 성상담 프로그램 확충 및 개발과 지원을 늘리는 등 대학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방이 필요하다. 체계적이고 적절한 대학 내 성교육과 성상담 프로그램은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잘못된 통념으로 인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성을 줄이고, 더 나아가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또한 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선행연구는 강간과 같은 심각한 수준의 성폭력 범죄를 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상 속에 더욱 교묘하게 만연해 있어 강간에 비해 사회적으로 가볍게 여겨지기 쉬운 성희롱과 성희롱 통념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성희롱 인식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성희롱의 유형과 피해자의 대처 정도에 따라 상황을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통념,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의 관계가 성희롱의 상황에 따라 그 메커니즘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선행연구는 한 두 가지의 시나리오나 기사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성희롱의 판단에는 피해자의 성별, 성희롱의 행위유형, 성희롱이 일어난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다양한 상황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 또한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도 성희롱의 여러 상황적 요소를 달리함에 따라 성희롱 피해자를 비난하는 정도나 성희롱의 판단과 인식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희롱 상황을 판단하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 상황적 요소에 따른 차이를 밝히는 것은, 어떠한 요소가 성희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며 남녀 간에 성희롱 판단의 차이를 일으키는 결정적 상황 요소는 무엇인지 등과 같이 성희롱 관련 교육과 상담, 연구에 더욱 폭넓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그에 따른 후속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 대학생에 한정되어 있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남성과 여성 표본의 수에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 이러한 표본 수의 차이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연령대와 지역을 대상으로, 남녀 표본의 수를 비슷하게 모집하여 교차타당화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준거변수를 모두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측정하여 사용한 연구이기 때문에 피험자들이 실제 자신의 경향성을 반영하여 답변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는 방향으로 긍정 왜곡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험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매개효과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성희롱의 상황적 요소를 변화시켜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의 메커니즘을 알아본 선행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므로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여 그 원인을 밝혀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희롱의 행위유형과 피해자의 대처 수준을 각각 하나의 변수로서 연구모형에 포함시켜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성희롱 피해자 비난 간 관계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밝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정애, 박경 (2013).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들의 피해자 공감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청소년학연구**, 20(5), 107-129.
- 국가인권위원회 (2015). **성희롱 2차 피해 실태 및 구제강화를 위한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2016).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 국민일보, “갯속말 게임 이렇게 악용하다니... 신입생 성희롱에 대학 ‘발칵’”,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468912&code=61121211&cp=nv>, 2017년 5월 16일자.
- 국민일보, “온라인에 숨어든 ‘女 혐오’... 대학 ‘단톡방’ 성희롱 심각”,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48856&code=11131100&cp=nv>, 2017년 5월 17일자.
- 김성호, 이한근, 서보경, 김성수 (2009). 서비스 실패에서 사후 가정법 사고가 고객참여 수준에 따라 고객의 부정적 감정 및 사후반응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경영학회지**, 10(4), 71-93.
- 김은지, 박지선 (2011).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 - 성역할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2(2), 171-183.
- 김재은, 김지현 (2016). 성별에 따른 남성중심집단과 여성중심집단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강간통념의 관계. **상담학연구**, 17(1), 187-205.
- 김정규 (1998). 성피해의 심리적 후유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331-345.
- 김정아, 구해경, 현명호 (2013). 남자 대학생의 성희롱 통념과 공감능력 및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사회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6), 295-313.

- 김정인, 손영미, 김효창 (2006). 성별 및 성희롱 경험에 따른 성희롱 통념과 성 역할 관련 태도들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4), 377-397.
- 김정인, 최상진, 박정열 (2002). 성희롱 행위에 대한 대처인식 및 가용 자원의 기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2), 53-74.
- 김정인, 최상진, 손영미 (2001). 성희롱 문제 지각에서 성차 및 성 역할 태도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3), 1-21.
- 김혜선 (2008).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성희롱 통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9(4), 146-163.
- 김혜숙, 안상수, 안미영, 고재홍, 이선이, 최인철 (2005).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성 하위 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3), 117-133.
- 나윤경, 노주희 (2013). 대학 내 성폭력 가해자 연구. **여성학논집**, 30(2), 169-203.
- 박갑제, 임성문 (2012).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 -경로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1), 45-68.
- 박지선, 김정희 (2011).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가해자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학연구**, 19(2), 77-96.
- 서윤정, 박지선 (2013).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7(1), 33-59.
- 서의훈 (2004).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남녀대학생들의 인식**. 전국여교수연합회 부산·울산·경남지회 2004 춘계학술세미나 및 총회 자료집.
- 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5).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I)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2), 39-66.
- 안상수, 백영주, 김인순, 김혜숙, 김진실 (2007).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7, 2-204.

- 안서원, 김정인, 김미라, 이경성 (2004). 성희롱 장면에서의 반복노출로 인한 태도 변화와 태도의 예측.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1), 1-10.
- 양돈규, 김정인 (2016).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성희롱 문제인식과 성희롱 행동경험에 미치는 영향. **여성연구**, 91, 73-96.
- 양동옥, 국혜윤, 백현경, 윤가현 (2012). 참가자의 성별, 피해 여성의 옷차림 종류와 음주량 수준에 따른 성폭력 책임 귀인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323-345.
- 우종필 (2015). 구조방정식 모델과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된 조절모델 및 조절된 매개모델에 대한 고찰: 만족, 신뢰, 의존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상품학연구**, 33(4), 45-56.
- 유문숙, 박지원, 유미애 (2012). 남녀 대학생의 남녀평등의식, 성태도와 성희롱 통념 간의 관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6(1), 14-22.
- 윤병해, 고재홍. (2006). 양가적 성차별 태도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1), 1-19.
- 이명신 (2012). **경상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소 보고서**. 진주:경상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소.
- 이명신 (2014). 성희롱(Sexual Harassment)의 재정의 -남녀대학생의 강간통념, 성희롱 인식, 성적 괴롭힘 행동을 중심으로 경험적 재구성. **젠더와 문화**, 7(1), 43-97.
- 이명신, 양난미 (2012). 성폭력 수사에 있어 이차피해 과정: 남성 경찰관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83, 149-197.
- 이석재, 최상진 (2001). 강간통념 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사건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97-116.
- 이은하 (2010). 직장 내 성희롱 연구에 대한 문헌적 고찰. **젠더연구**, 15, 69-90.
- 이원숙 (2001). 캠퍼스 성희롱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 5, 95-118.

- 이재경, 마경희 (2002). 직장 내 성희롱 실태 및 법적 규제에 대한 조사연구. **여성학논집**, 19, 1-14
- 이재희, 이기숙 (2009). 2차적 성폭력의 발생과 피해 정도 - 부산성폭력상담소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집**, 20, 157-189.
- 이정교, 서영남, 최수진 (2009). 한국 신문에 나타난 강간보도의 통시적 분석: 강간통념과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45, 425-462
- 이정원, 안상수, 김혜숙 (2009).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성 관련 정책 및 강간피해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9(6), 208-209.
- 장필화 (1995).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의 모색 - 지침서 개발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11, 113-145.
- 정선호, 서동기 (2016).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된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257-282.
- 조선일보, “동기 카톡방에서 여교수 성희롱 대학생들 벌금형”,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6/2017062601632.html,
 2017년 6월 26일자.
- 조주현 (2008). 대학 내 교수성희롱의 성차별적 특징: 세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1, 219-258.
- 최인숙, 김정인 (2015). 성폭력 통념수용, 대인폭력수용 및 성역할 관련 태도가 공격적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3), 277-300.
- 최인철, 진정희 (2003).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성희롱 사건의 해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 1, 409-410
- 파이낸셜뉴스, “카톡방, 채팅창 성희롱도 처벌 추진”,
<http://www.fnnews.com/news/201705300924133720>, 2017년 5월 30일자.

- 하혜숙, 김계현 (2007). 성희롱 판단에 대한 남녀 차이 분석 연구 - 대학내 성희롱 사안 및 예방교육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상담학연구**, 8(2), 437-450.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성희롱 실태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 한주원 (2006). 직장 내 성희롱이 조직유효성 및 개인의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 **비서학논총**, 15(1), 29-48.
- 한희정, 전해정 (2015). 한국사회의 성희롱 개념 연구: 국내학술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연구논총**, 31(1), 87-128.
- Aronson, E. (2002). **사회심리학 - 사회적 동물 제8판**. (구자숙, 김상기, 김지환, 김철수, 박재호, 안신호, 이석재, 이진환, 이훈구 역). 탐구당. (원전은 1999에 출판).
- Grubb, A., & Turner E. (2012) Attribution of blame in rape cases: A review of the impact of rape myth acceptance, gender role conformity and substance use on victim blaming.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7(5), 443-452.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Correia, I., Vala, J., & Aguiar, P., (2001). The Effects of Belief in a Just World and Victim's Innocence on Secondary Victimization, Judgements of Justice and Deservingness. *Social Justice Research*, 14(3), 327-342.
- Glick, P., & Fiske, S.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491-512.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ress.
- Janoff-Bulman, R. (1979). Characterological versus behavioral self-blame: Inquiries into depression and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798-1809.
- Janoff-Bulman, R., Timko, C., & Carli, L. L. (1985). Cognitive bias in blaming the victim.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1*, 161-177.
- Kline, R. B. (2010). 구조방정식모형: 원리와 적용. (이현숙, 김수진, 전수현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4에 출판).
- Muller, D., Judd, C. M., & Yzerbyt, V. Y. (2005). When moderation is mediated and mediation is modera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852-863.
- Yamawaki N. (2007). Rape Perception and the Function of Ambivalent Sexism and Gender-Role Traditionalit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2*(4), 406-423.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ABSTRACT

The influence of Ambivalent Sexism on Blame of Victim among undergraduates: Mediated Moderation Effect of Sexual Harassment Myth and Gender Difference

Pang, Sin jeong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ed moderation effect of gender difference through sexual harassment myt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mbivalent sexism and blame of victim. Korea Multiple Sexism Inventory(K-MSI), Ambivalent Sexual Harassment Myth Scale and four kinds of sexual harassment case scenarios were administered to 263 undergraduates.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ambivalent sexism, sexual harassment myth, and blame of victim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Second, gender differenc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mbivalent sexism, sexual harassment myth, and blame of victim. Third, sexual harassment myth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mbivalent sexism and blame of victim in physical sexual harassment-active·passive

coping situation and verbal sexual harassment–active coping situation. Fourth,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showed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benevolent sexism and blame of victim in physical sexual harassment–active coping situ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hostile sexism and blame of victim in verbal sexual harassment–active coping situation. Fifth, the effect of hostile sexism on blame of victim through sexual harassment myth were showed fully mediated moderation effect by gender difference in verbal sexual harassment–active coping situation.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ambivalent sexism, sexual harassment myth, blame of victim, mediated moderation effect

부 록

부록 1. 예비조사 설문지

부록 2. 설문지 표지 및 동의서

부록 3. 본 설문지

※ 본 설문지는 대학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다룬 가상 시나리오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은 연구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시나리오 1>

여대생 A양은 평소 남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며 노출이 심한 옷을 즐겨 입는 편이다. 어느 날, 강의 시간에 옆자리에 앉아있던 선배가 “과에 그렇잖아도 남자가 많아서 칙칙한데 분위기 화사하게 너라도 좀 예쁘게 꾸며야 학교 오는 낙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A양은 순간 기분이 상했지만 학과 내 선후배 서열이 엄격한데다 앞으로도 계속 볼 사이인 선배에게 화를 내기는 어려워 뭐라 대꾸하진 못하고 그냥 힘없이 웃어보였다.

1-1. 이 사례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희롱이 아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성희롱이다

1-2. A양의 대처는 어느 수준의 적극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극적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적극적

<시나리오 2>

여대생 B양은 평소 남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며 노출이 심한 옷을 즐겨 입는 편이다. 어느 날, 학과 모임 술자리에서 옆에 앉은 선배가 자신의 어깨를 감싸자, B양은 주변에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선배에게 화를 내며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신고하겠다고 다그쳤다.

2-1. 이 사례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희롱이 아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성희롱이다

2-2. B양의 대처는 어느 수준의 적극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극적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적극적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설문지

안녕하세요?

본 연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설문지는 성인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의 남성과 여성에 대한 태도와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성희롱 사건을 해석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설문결과는 성인남녀 대학생의 남성과 여성에 대한 태도와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성희롱 사건을 해석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남녀 대학생의 성교육이나 정상담에 올바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에서 얻어진 결과는 컴퓨터로 처리되어 오직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응답해주신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고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에는 맞거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주어진 문항을 읽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에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본 설문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응답하기 불편한 문항이 있을 경우 응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응답하신 문항은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솔직한 응답은 연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히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어 본 설문조사에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답례품을 준비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시는 분들은 다음 장의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시고 시작 해주시면 됩니다.

연구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원할 경우, 아래 연구 담당자 메일로 연락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상담심리전공
연구 담당자: 방신정 (E-mail: psj4698@naver.com)
지도교수: 이정윤

연구 참여 동의서

본인은 위의 내용을 전달받고 숙지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내용들을 연구자가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_____ (서명)

- 서명하신 뒤, 다음 장부터 설문을 시작해주십시오. -

I. 다음은 자신의 남성과 여성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O표시(혹은 V표시)해 주십시오.

NO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 등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한다.	1	2	3	4	5
2	여성들은 남녀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평등만을 주장한다.	1	2	3	4	5
3	여성은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서 남자들을 부러먹는다.	1	2	3	4	5
4	신체상의 위험부담이 큰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감당해야 한다.	1	2	3	4	5
5	남자는 이지적이고 여자는 감성적 이므로 그에 맞는 일을 할 때 남녀가 조화를 이룬다.	1	2	3	4	5
6	남성은 여성과의 사랑이 없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1	2	3	4	5
7	여학생보다는 책임질 줄 아는 남학생이 학급반장이 되어야 학급운영이 더 잘된다.	1	2	3	4	5
8	여성들은 감정적으로 불안하여 큰 일을 맡기가 어렵다.	1	2	3	4	5
9	여자가 먼저 성적으로 유혹하고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희롱이라고 주장한다.	1	2	3	4	5

10	가벼운 짐일지라도 여성에게 들리기보다는 남성이 들어주어야 한다.	1	2	3	4	5
11	여자는 남자에 비해 가정을 잘 돌보는 세심함을 지니고 있다.	1	2	3	4	5
12	여성의 사랑을 얻은 남자가 진정한 남자라고 할 수 있다.	1	2	3	4	5
13	우리 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많은 만큼 남성에게 여성보다 더 많은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	1	2	3	4	5
14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결단력이 부족해서 중요한 직책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	1	2	3	4	5
15	추운 날씨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옷을 벗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1	2	3	4	5
16	여성들은 데이트 비용은 모두 남성에게 떠맡기면서 비싼 명품만을 선호한다.	1	2	3	4	5
17	여자는 자녀를 기르고 집안일을 돌보는 능력이 있다.	1	2	3	4	5
18	사랑하는 여성이 있을 때 남성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	1	2	3	4	5
19	남자가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여성들은 항상 불평을 늘어놓는다.	1	2	3	4	5
20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기분이 쉽게 상하는 편이어서 업무처리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1	2	3	4	5
21	여성들은 곤란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남자에게 의지하려 든다.	1	2	3	4	5

1-2. A양의 행동이 어느 정도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한다.
- ② 약간 비난을 받아야 한다.
- ③ 중간 정도의 비난을 받아야 한다.
- ④ 비난을 크게 받아야 한다.
- ⑤ 전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

1-3. 이 사례에 대해 만일 선배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책임이 전혀 없다.
- ② 약간 책임이 있다.
- ③ 절반의 책임이 있다.
- ④ 매우 책임이 크다.
- ⑤ 전적인 책임이 있다.

<시나리오 3>

여대생 C양은 평소 남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며 노출이 심한 옷을 즐겨 입는 편이다. 어느 날, 강의 시간에 옆자리에 앉아있던 선배가 “과에 그렇잖아도 남자가 많아서 칙칙한데 분위기 화사하게 너라도 좀 예쁘게 꾸며야 학교 오는 날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그러자 C양은 주변에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선배에게 화를 내며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신고하겠다고 다그쳤다.

3-1. C양에게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책임이 전혀 없다.
- ② 약간 책임이 있다.
- ③ 절반의 책임이 있다.
- ④ 매우 책임이 크다.
- ⑤ 전적인 책임이 있다.

3-2. C양의 행동이 어느 정도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한다.
- ② 약간 비난을 받아야 한다.
- ③ 절반의 비난을 받아야 한다.
- ④ 비난을 크게 받아야 한다.
- ⑤ 전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

3-3. 이 사례에 대해 만일 선배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책임이 전혀 없다.
- ② 약간 책임이 있다.
- ③ 절반의 책임이 있다.
- ④ 매우 책임이 크다.
- ⑤ 전적인 책임이 있다.

Ⅲ. 다음은 자신의 성희롱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O표시(혹은 V표시)해 주십시오.

NO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성희롱을 당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사실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2	여자들은 직장 혹은 학교 내의 성희롱 발생실태에 대해서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3	학점이나 승진을 위해서 여성은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이용할 수 있다.	1	2	3	4	5
4	성희롱 사건은 성적인 농담을 여성들이 과잉반응해서 문제가 확대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1	2	3	4	5
5	성희롱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가 양심을 품고서 한 행동이다.	1	2	3	4	5
6	성희롱은 개인 간의 사소한 사건임에도 사회문제로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	2	3	4	5
7	남녀관계에서 여자가 “싫어”라고 해도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	1	2	3	4	5
8	악의 없는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은 직장생활(학교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1	2	3	4	5
9	우리 사회의 통념상 가벼운 신체접촉이나 성적 농담은 수용해야 한다.	1	2	3	4	5

다.

10	남자가 매력적인 여성에게 성적 유혹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1	2	3	4	5
11	남자들이 사회생활에서 여성에게 성적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1	2	3	4	5
12	가벼운 신체접촉이나 성적인 농담을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	1	2	3	4	5
13	성희롱 사건은 친근감의 표현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1	2	3	4	5
14	성희롱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1	2	3	4	5
15	여자가 정숙하다면 성희롱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16	성희롱은 피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1	2	3	4	5
17	성희롱을 당하는 사람은 그럴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1	2	3	4	5
18	여자들이 성희롱을 당하는 것은 대부분 야한 옷을 입고 자극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1	2	3	4	5
19	성희롱 사건 발생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피해자의 책임도 크다.	1	2	3	4	5
20	성희롱을 당하는 여성은 평상시 남자관계가 복잡하다.	1	2	3	4	5
21	성희롱 문제제기로 고용상 혹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여성은 거의 없다.	1	2	3	4	5

22	성희롱을 거부한다고 해서 직장(학교)에서 인사상(학점)의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다.	1	2	3	4	5
23	직장(학교) 내에서 성희롱은 무시해 버리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1	2	3	4	5
24	성희롱을 당하는 여성들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는다.	1	2	3	4	5

IV. 다음은 일반적인 배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정보는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 () 세

3. 귀하는 대학 몇 학년입니까?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문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빠짐없이 모든 문항에 응답하셨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